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 중국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Ⅱ

중국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절 수입 통관절차	16
제3절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22
제2장 검역제도	23
제1절 검역제도 일반	23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36
제3절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82
제3장 라벨링제도	83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83
제2절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88
제3절 라벨링	120
제4절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122
제4장 통관보류 및 역류사례	123
제1절 식수입식품의 반품, 폐기사례	123

주요국 변경사항 요약

I 중국

□ 검역제도

- 질검총국에서 한국 대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 요구를 발표하여 2015년 8월 4일부터 한국 포도의 대 중국 수출을 허가함
-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제8호 공고에서 절임채소 위생기준 (GB2714-2015) 정식 발표(2015.10.31.)하여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함
- 국가식품의약국(CFDA)이 <식품 리콜 관리방법>을 발표해 201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최신 수정 내용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보건식품 및 주류 관련 규정 강화
- <중화인민공화국 新식품안전법>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출입식품, 영유아 조제식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 보건식품 관리강화 및 제도 변경 실시



2015 주요국 식품수입제도 모니터링

중 국

Food Import Regulation Monitoring of Overseas Countries

제1장 통관제도

제2장 검역제도

제3장 라벨링제도

제4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1. 관리체계

가. 세관 관리체계

세관총서

- 세관총서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전국 세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세관업무를 관리하는 최고 영도기구로 현재 광주에 광동분서가 있으며, 세관총서의 파견기구로 천진과 상해에 특파원사무소가 설립됨

직속세관

- 직속세관은 세관총서에서 직접 영도하며 일정 구역범위의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세관임
 - 현재 직속세관은 41개로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음

소속세관

- 소속세관은 직속세관에서 영도하며 구체적 세관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세관으로 일반적으로 항구와 세관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소속세관은 600개임

세금징수

- 세금징수는 대외무역 관리제도의 중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세금징수는 관세징수와 수입부분에 대한 세관 대리징수가 있음

- 세관은 수입 화물과 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동시에 기타 기구를 대리하여 증치세, 소비세, 선박톤세 등 수입부분세금을 징수함

나. 관리 법률체제

■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

구분	분 류	주요법규
1	법 률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 세관법 - 특허법 - 상표법 - 저작권법
2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저작권법실시조례 - 상표법실시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보장조치조례 - 반보조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 선박톤세잠행조례 - 외환관리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화물자동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잠행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수입약품관리방법 - 정산약품관리방법 - 방사성약품관리방법 - 수입가축약품관리방법 - 외상투자기업자동수입허가관리 실시세칙



2. 수입관리제도(법률 & 행정법규)

가. 국가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국가주석 령 15호, 2004.07.01)

□ 대외무역경영자 관리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화물 & 기술 수출입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기타 위탁기구에 등록(备案) 등기(登记). 단 등록 등기가 필요 없다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규정한 경우 제외(9조)

○ 국영무역업체 관리

- 부분 화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 권한을 수여받은 기업에서만 수출입경영. 단 국가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부분 할당량을 권한이 없는 기업에 허용한 경우 제외(11조)

○ 대외무역업무의 위탁 및 대리

-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접수할 수 있으며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무역 업무 대리(대외무역법 12조항)

□ 화물 & 기술 수출입 관리

○ 수출입허가

-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 제외(14조)
-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상황 모니터링수요차원에서 부분 자유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수출입자동허가 실행, 자동허가 실행 수출입화물은 세관 신고 전에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혹은 위탁기구에 신청(15조)

■ 2013년 자동수입 허가관리 농산물 ■

품목	HS코드	비고
소고기	0201 1000 10	신선 혹은 냉장
	0201 1000 90	
	0201 2000 10	
	0201 2000 90	
	0201 3000 10	
	0201 3000 90	
	0202 1000 10	냉동
	0202 1000 90	
	0202 2000 10	
	0202 2000 90	
	0202 3000 10	
	0202 3000 90	
	0206 10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2100 00	
	0206 2200 00	
0206 2900 00		
돼지고기	0203 1110 10	신선 혹은 냉장
	0203 1110 90	
	0203 1190 10	
	0203 1190 90	
	0203 1200 10	
	0203 1200 90	
	0203 1900 10	
	0203 1900 90	
	0203 2110 10	
	0203 2110 90	
	0203 2190 10	냉동
	0203 2190 90	
	0203 2200 10	
	0203 2200 90	
	0203 2900 10	
0203 2900 90		
0206 3000 0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4100 00		
0206 4900 00		



품목	HS코드	비고
양고기	0204 1000 00	신선 혹은 냉장 면양류
	0204 2100 00	
	0204 2200 00	
	0204 2300 00	
	0204 3000 00	냉동 면양류
	0204 4100 00	
	0204 4200 00	
	0204 4300 00	
	0204 5000 00	신선 냉장 냉동 산양
	0206 8000 10	내장 등 기타부위
0206 9000 10		
닭고기	0207 1100 00	신선 혹은 냉장
	0207 1200 00	
	0207 1311 00	
	0207 1319 00	
	0207 1321 00	
	0207 1329 00	
	0207 1411 00	냉동
	0207 1419 00	
	0207 1421 00	
	0207 1422 00	
0207 1429 00		
0504 0021 00		
신선우유	0401 1000 00	설탕 단물질 미 첨가
	0401 2000 00	
	0401 4000 00	
	0401 5000 00	
분유	0402 1000 00	
	0402 2100 00	
	0402 2900 00	
	1901 1000 10	영유아용 조제분유
대두	1201 1000 00	
	1201 9010 00	
	1201 9020 00	
	1201 9030 00	
	1201 9090 00	

품목	HS코드	비고	
유채씨	1205 1010 00		
	1205 1090 00		
	1205 9010 00		
	1205 9090 00		
식용유	1507 1000 00	대두유	
	1507 9000 00		
	1509 1000 00	올리브유	
	1509 9000 00		
	1510 0000 00		
	1511 1000 00	팜유	
	1511 9010 00		
	1511 9020 01		
	1511 9090 00		
	식용유	1514 1100 00	겨자유
		1514 1900 00	
		1514 9110 00	
1514 9190 00			
1514 9900 00			
대두박	2304 0010 00		
	2304 0090 00		
담배	2401 1010 00	담배	
	2401 1090 00		
	2401 2010 00		
	2401 2090 00		
	2401 3000 00		
	2402 1000 00		
	2402 2000 00		
	2402 9000 01		
	2402 9000 09		
	2403 1100 00		
	2403 1900 00		
	2403 9100 10		
	2403 9100 90		
	2403 9900 10		
	4813 1000 00		담배 종이 필터 등
	4813 2000 00		
	4813 9000 00		
	5601 2210 00		

자료 : <http://www.mofcom.gov.cn>

- 수출입 제한화물의 관리
 -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하여 쿼터(配額), 허가증(許可證) 등 방식으로 관리하며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행
 - 쿼터 및 허가증관리를 하는 화물, 기술은 국무원규정에 따라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에서 직접 혹은 국무원 기타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허가를 해야 함
 - 국가는 부분 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쿼터(稅配額)관리를 실행(19조)
- 상품검사
 -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정제도 실행,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인증, 검험, 검역 및 원산지관리 진행(21/22조)

2)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국가주석 령 35호, 2000.07.08)

□ 수입화물 관리

- 세관신고
 - 수입화물의 수령인은 운송도구 입경신고일로부터 14일내에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입허가증 및 관련 증서를 제출, 기한 초과 시 체납금 징수(24조)
 - 세관에서 통관신고 접수 후 통관신고서 및 내용은 수정, 철회하지 못하며 확실한 정당사유가 있고 세관의 동의를 있어야 가능(26조)
 - 수입화물은 세관의 검사를 받으며 세관 검사 시 수령인은 현장에 화물의 이동, 개봉, 재포장을 책임, 세관은 필요시 직접검사를 진행. 수령인의 신청과 함께 세관총서 허가 시 검사 면제(28조)
- 통관지점
 - 수입화물은 입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받아야하나 수령인의 신청과 세관의 동의하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운송지역에서 통관수속을 받을 수 있음(35조)
- 기타사항
 - 국가가 수출입금지 혹은 제한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 국무원 규정 혹은 국무원관련부서에서 법률과 행정법규가 수여한 권한에 따라 내린 규정 등을 근거로 감독관리 실행(40조)
-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 관련 원산지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상품분류 역시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규정에 따라 확정(41/42조)

관세

- 관세지급필가격(完税价格)의 산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이 거래가격을 기초로 확정, 거래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사정
 - 수입화물의 관세지급필가격은 화물가치, 수입항 하역전 운송비 및 관련비용, 보험료 등 포함(55조)

나. 국무원 행정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국무원 령 332호, 2002.01.01실시)

수입제한 화물

- 국가에서 수량제한을 규정한 수입제한화물은 쿼터(配额)관리를 실행하며 기타 수입제한화물은 허가증(许可证)관리를 실행, 관세쿼터(关税配额)관리 수입화물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집행(관세쿼터관리화물 참조)(11조)

관세쿼터관리 화물

■ 2014년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량과 신청조건 ■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1	밀	963.6	9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3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가공량 400톤 이상의 생산업체 5) 2013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No	품목	할당량	국영무역	신청조건
2	옥수수	720	6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3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5만 톤 이상인 배합사료 생산업체 5) 옥수수를 원료로 연간 수요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타 생산업체 6) 2013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3	쌀	532 (장립: 266/ 중단립: 266)	5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3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식량 도소매자격을 있는 연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 식량업체 5) 식량 연간 수출입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6) 2013년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이 있고 벼와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장립, 중단립 구분신청
4	목화	89.4	33%	1) 국영무역업체 2) 2013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3) 방적설비 5만 방추 이상의 면방적업체
5	설탕	194.5	70%	1) 국영무역업체 2) 국가비축기능의 중앙업체 3) 2013년 설탕 관세할당이 있으며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4) 일원당가공량≥600톤, 등록자본금≥1,000만 위안, 연간 매출액≥4.5억위안인 제당업체 5)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업체
6	양모	28.7		1) 2013년 양모, 섬수모 관세할당이 있고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신설 가능한 양모, 섬수모 가공능력 5,000톤 이상 업체 2) 2014년 1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연도 검사 통과 업체 3) 전년도 세관, 공상, 세무, 품질검험, 외환, 사회보장, 환경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는 업체 4) “농산물수입관세할당관리임시시행방법”, “2013년 양모, 섬수모 수입 관세할당관리실시세칙”, “2013년 양모, 섬수모 수입국가별관세할당 관리실시세칙”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
7	섬수모	8.0		

자료 : <http://www.mofcom.gov.cn>

■ 2013년 관세쿼터관리 농산물 수입관세 ■

No	품목	HS 코드	할당 내 세율	할당 외 세율	
				최혜국	일반
1	밀	10011100	1	65	180
		10011900			
		10019100			
		10019900			
2	옥수수	10051000	1	20	180
		10059000		65	
3	쌀	10061011	1	65	180
		10061019			
		10061091			
		10061099			
		10062010			
		10062090			
		10063010			
		10063090			
		10064010			
10064090					
4	목화	52010000	1	40	125
		52030000			
5	설탕	17011200	15	50	125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0			
		17019920			
17019990					
6	양모	51011100	1	38	50
		51011900			
		51012100			
		51012900			
		51013000			
		51031010			
7	섬수모	51051000	3	38	50
		51052100			
		51052900			

자료 : 2013년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관리

국영무역관리

- 국가는 부분화물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하며 국영무역관리화물목록과 국영무역기업목록은 국무원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서 국무원경제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 및 조정 발표(45/46조)

【 중국의 국영무역관리 농산물목록 】

No	품목	HS코드
1	밀관련	10011000 / 10019010 / 10019090 / 11010000 / 11031100 / 11032100
2	옥수수관련	10051000 / 10059000 / 11022000 / 11031300 / 11042300
3	쌀관련	10061011 / 10061019 / 10061091 / 10061099 / 10062010 / 10062090 10063010 / 10063090 / 10064010 / 10064090 / 11023010 / 11023090 11031921 / 11031929
4	대두유	15071000 / 15079000
5	팜유	15111000 / 15119010 / 15119090
6	겨자유	15141010 / 15141090 / 15149110 / 15149190 / 15149900
7	설탕	17011100 / 17011200 / 17019100 / 17019910 / 17019920 / 17019990
8	담배	24011010 / 24011090 / 24012010 / 24012090 / 24013000 / 24021000 24022000 / 24029000 / 24031000 / 24039100 / 24039900 / 48131000 48132000 / 48139000 / 55020010 / 56012210
9	목화	52010000 / 52030000

자료 : <http://www.mofcom.gov.cn>

2)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국무원 령 392호, 2004.01.01실시)

2014년 관세실시방안

-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3.12월 <2014 관세실시방안>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실시
- 관세인하 품목은 유류품, 유아식품 등 총 767여개 품목으로 기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연도잠정관세율 실시 예정

- 이중 식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총 36개 품목으로, 한국산 대중 수출관련 품목은 냉동넙치, 냉동대구, 어란 등의 수산물과 유아식품 등이 있음

▣ 주요 품목별 관세인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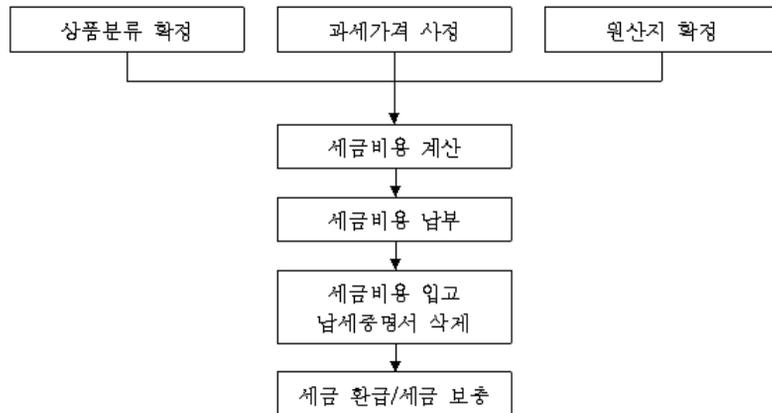
품목명	HS CODE	기존적용세율	잡정세율
냉동대구	0303 6300	10%	2%
냉동넙치	0303 3200	12%	2%
수정어란	0511 9111	12%	0%
유아식품	1901 1000	15%	5%
조제분유	1901 1010	15%	5%

3. 세금 징수

□ 징세절차

-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관세지급필가격의 사정, 원산지 확정을 통해 관세지급 필가격과 세율을 확정하여 세금과 비용을 계산하며 세관의 징세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세관의 징세절차 ▣



□ 수입관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관세	수입관세=과세가격×증가관세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증량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	- 화물 실제 수입수량을 확정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관세	수입관세=화물수량×단위세액+과세가격×관세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슬라이딩 관세	수입관세(증가)=과세가격×잠정세율 수입관세(증량)=화물수량×잠정세율	-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 확정 - 관세 세율 계산공식에 따라 세율을 계산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 수입 소비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소비세=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1-소비세 세율)	- 화물 CIF가격을 확정 - 환율 적용원칙으로 외화를 인민폐로 계산
증량징수	소비세=소비품 수량×소비세 세율	- 공식에 따라 징수할 관세를 계산
복합징수	소비세=증가 소비세+증량 소비세	

□ 수입 증치세 계산

구 분	계산공식	계산절차
증가징수	증치세=징세가격×증치세 세율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율+소비세	- 과세가격과 관세를 계산 - 소비세를 계산 - 증치세를 계산

제2절 수입 통관절차

1. 수입화물의 통관절차

화물별 수입 통관절차

구분	초기단계	출입국단계	후속단계
일반수입화물	/	수입신고 세금비용 납부 검사 및 통과 화물 수령	/
보세수입화물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심의삭제
특정감면세화물	감면세증명 신청		세관 감독관리 해소
임시입국화물	전시품입국 등기		사건 취소

일반 수입화물의 세관 통관절차

-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 2) 세관 서류심사진행
-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 5) 신청인 세금 납부
- 6) 세관 화물검사
- 7) 세관 화물통과
- 8) 신청인 화물수령
- 9) 세관 증명서 발급

수입화물의 통관관련서류

기본서류	특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증서 - 상무부서의 비준증서 - 가공무역등록매뉴얼 - 감면세증명 - 외환송금심사증서 - 담보증서 등

2. 수입식품(일반)의 통관절차

일반 수입식품의 세관 통관절차

☞ 검험검역 1단계

- 1) 신청인 검험검역신고
- 2)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입경화물통관단 발행

☞ 통관단계

- 1) 신청인 사전입력신고
- 2) 세관 서류심사진행
- 3) 신청인 세관 현장 통관관련서류제출
- 4) 세관 세금납부서 발행
- 5) 신청인 세금 납부
- 6) 세관 화물검사
- 7) 세관 화물통과
- 8) 신청인 화물수령
- 9) 세관 증명서 발급

☞ 검험검역 2단계

- 1)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샘플검사
- 2)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위생검역증서 발행

일반 수입식품의 통관관련서류

출입경검험검역기구	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원산지증명서 - 위생증명 - 중문라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무역계약서 - 입경화물통관단

3. 수입식품의(품목별) 통관절차

가. 육제품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7A

Code	명 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소, 돼지, 양, 닭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소, 돼지, 양, 닭은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나. 수산동물

- 검역조건 :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진경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식물제품>에 근거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 통관조건 : AU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Lawfu fish for products clearance certificate	농업부

※ 멸종위기 수산물은 농업부에서 발급한 멸종위기물종수입허가증명서 제공

※ U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은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비막치어(tooth fish), 눈다랑어 (bigeye tunas), 대서양 참다랑어(atlantic bluefin), 황새치(sword fish) 농업부 발급 합법어획채취제품통관증명 추가

다. 채소 & 과일류

- 검역조건 : 신선과일 및 토마토, 가지, 고추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A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라. 식량 & 가공품

- 검역조건
 - 식량은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식량 가공품(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등)은 국가질검총국 2004년 공고 111호<진경검역심사허가를 취소하는 동식물제품>에 근거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 발급이 필요 없이 일반 식품과 동일

- 통관조건 : At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t	관세쿼터 증명 Certificate of customs quota	상무부쿼터허가증사무국

※ t 관세쿼터 증명은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밀, 옥수수, 벼 및 가공품은 통관서류에 상무부 발급 관세쿼터 증명 추가

마. 유제품(조제분유 포함)

- 검역조건 :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한 <Attached Health certificate for dairy products exported to China from Republic of Korea>, 신선우유는 국가질검총국 2002년 공고 2호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 진경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목록>에 근거 수입자는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진경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신청하여 취득
- 통관조건 : 7A

Code	명 칭	발급기구
7	자동수입허가증 Automatic import licence	상무부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 7 자동수입허가증은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에만 적용

- 통관절차 : 일반식품과 동일 단 통관서류에서 크림, 밀크, 유장, 조제분유는 상무부 발급 자동수입허가증 추가

바. 약재&기능성 식품(대표 인삼류)

- 검역조건(약재) :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인삼(홍삼, 백삼 등)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약재허가증서를 신청하여 취득(수입약재는 통관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검사하여 수입약품통관단 발급)
- 검역조건(기능성 식품) : 중국위생부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에 수록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수입 전에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보건식품등록을 신청하여 수입보건식품허가증서 취득

○ 통관조건 : AQ

Code	명 칭	발급기구
A	입경화물통관단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goods inward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기구
Q	수입약품통관당 Report of inspection of soundness on import medicines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Q 수입약품통관당은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에만 적용

○ 통관절차 : 기능성 식품은 일반식품과 동일하며 신선인삼을 제외한 기타(홍삼, 백삼 등)는 지정 세관(약품수입 허가세관 & 약재수입 허가세관)을 통하여 수입

※ 첨부 1) 약품수입 허가세관 & 약재수입 허가세관

구분	세관
약품수입허가세관 (19)	북경(北京), 천진(天津), 대련(大连),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Ningbo(宁波), 복주(福州), 하문(厦门), 청도(青岛), 무한(武汉), 광주(广州), 심천(深圳), 주해(珠海), 해구(海口), 중경(重庆), 성도(成都), 서안(西安), 남녕(南宁)
약재수입허가변경세관 (19)	흑하(黑河), 동녕(东宁), 집안(集安), 장백(长白), 도문(图门), 삼합(三合), 이련호특(二连浩特), 만주리(满洲里), 빙상(凭祥), 동흥(东兴), 용방(龙邦), 서리(瑞丽), 천보(天保), 경흥(景洪), 하구(河口), 아라산구(阿拉山口), 콕이과사(霍尔果斯), 토이스특(吐尔尕特), 홍기랍보(红其拉普), 장목(樟木)

※ 첨부 2) 보건식품 사용가능 원료목록

人參、人參叶、人參果、三七、土茯苓、大蓟、女贞子、山茱萸、川牛膝、川贝母、川芎、马鹿胎、马鹿茸、马鹿骨、丹参、五加皮、五味子、升麻、天门冬、天麻、太子参、巴戟天、木香、木贼、牛蒡子、牛蒡根、车前子、车前草、北沙参、平贝母、玄参、生地黄、生何首乌、白及、白术、白芍、白豆蔻、石决明、石斛(需提供可使用证明)、地骨皮、当归、竹茹、红花、红景天、西洋参、吴茱萸、怀牛膝、杜仲、杜仲叶、沙苑子、牡丹皮、芦荟、苍术、补骨脂、诃子、赤芍、远志、麦门冬、龟甲、佩兰、侧柏叶、制大黄、制何首乌、刺五加、刺玫果、泽兰、泽泻、玫瑰花、玫瑰茄、知母、罗布麻、苦丁茶、金荞麦、金樱子、青皮、厚朴、厚朴花、姜黄、枳壳、枳实、柏子仁、珍珠、绞股蓝、胡芦巴、茜草、萆薢、韭菜子、首乌藤、香附、骨碎补、党参、桑白皮、桑枝、浙贝母、益母草、积雪草、淫羊藿、菟丝子、野菊花、银杏叶、黄芪、湖北贝母、番泻叶、蛤蚧、越橘、槐实、蒲黄、蒺藜、蜂胶、酸角、墨旱莲、熟地黄、熟地黄、鳖甲
--

제3절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1. 웹사이트

- 중앙인민정부 : <http://www.gov.cn>
- 세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
- 상무부 : <http://www.mofcom.gov.cn>
-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http://www.sdfa.gov.cn>

2. 관련 법규

구분	주요법규	
법률 (전인대)	- 대외무역법 - 세관법	
행정법규 (국무원)	- 기술수출입관리조례 - 수출입관세조례 -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 화물수출입관리조례 -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 - 세관행정처벌조례
부서규장제도 (중앙부서)	- 세관수출입화물징세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관세지급필가격확정방법 - 세관지식재산권보호조례실시방법 - 대외무역경영자등록관리방법 - 화물수입허가증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검사관리방법 - 세관수출입화물감면세관리방법 - 화물자동수입허가증관리방법 -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잠행방법

3. 관련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2012년)



제2장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 관리체계

가. 국가질검총국 관리체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집법기능을 행사하는 국무원 직속기구임
-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 :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했고 약 300개 분국과 200여개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험과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책임지며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

■ 출입국검험검역기구, 세관, 품질기술 감독관리의 역할 ■

구 분	세 부 내 용
출입국검험검역기구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소속 - 출입국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수출입상품검험의 주관부서 -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한 신고와 검험검역만 책임
세 관	- 세관총서에 소속 -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징세와 합법성 감독을 진행
품질기술감독관리부서	- 국내 제품품질, 표준계량과 특종설비 등의 감독관리를 책임

나. 출입국검험검역 주요업무

업무분류	업무내용
수출입상품 검험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포함된 출입국 상품과 기타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검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출입국상품에 대한 검험
수입상품 인증관리	국가에서 인류건강과 동식물건강 및 환경보호와 공공안전과 연관되는 제품에 대한 강제성인증제도
입국폐기물원료 선적전의 검험	국가에서 원료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 폐기물에 대한 선적전 검험제도
수출상품 품질허가	국가에서 중요한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허가제도
식품위생 감독검험	수입식품(음료, 주류, 설탕류를 포함), 수출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공구와 설비에 대한 위생감독검험
동식물 검역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 및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적재용기, 포장물, 깔개재료, 동식물 전염병지역의 운송공구, 입국시 해체한 폐기 선박, 식물 종자와 종묘, 기타 번식재료에 대한 검역허가제도
출국상품 운송포장 검험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의 검험을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의 운송포장에 대한 성능검험
외상투자재산 감정	외상투자 재산 감정은 상품의 가치감정, 손실감정, 상품의 품목, 품질, 수량에 대한 감정 등을 포함
화물 적재와 파손 감정	선박과 컨테이너로 식량과 식용유식품, 냉동품 등 부식되기 쉬운 식품을 적재하여 수출할 경우, 선박과 컨테이너에 대한 감정
위생검역과 처리	출입국 인원, 교통공구, 컨테이너, 수하물, 화물, 우송물 등에 대한 의학검사와 위생검사
섭외검험검역감정 심사절차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설립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수출입상품 검험, 감정, 인증회사에 대한 심사
외국 및 국제조직과의 합작	WTO/TBT협약의사와 SPS협약의 자문업무, UN, APCE과 ASEM 등 국제조직과의 연락업무, 정부 간 검험검역 합작협약, 인증인가 합작협약, 검험검역 협의회 집행의정서 등의 체결과 실시를 책임

▣ 법률근거, 검험검역내용, 검험방식 ▣

업무	항목	세 부 내 역
수출입상품검험	법률근거	- “수출입상품검험법”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검험내용	- 수출입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검험방식	- 법정검험 - 계약검험 - 공정감정 - 위탁검험
출입국동식물검역	법률근거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검역내용	-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검역방식	- 입국검역 - 출국검역 - 중계검험 -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 출입국 운송공구 검역
국경위생검역	법률근거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검역내용	- 출입국 교통공구, 화물,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경, 생활시설,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와 샘플링검험
	검역방식	- 출입국 검역 - 국경 전염병 검사 - 출입국 위생감독

다. 법률체계

- 중국의 검역관리제도는 국가주석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 등 국가법,
- 국무원 령(令)으로 발표되는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등 행정법규,

- 주관부서 령(令)으로 발표되는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출입육류검험검역 관리방법>,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등 규장제도로 구성

■ 중국 수출입 관리제도의 법률체제 ■

구분	분 류	주요법규
1	법 률 (전인대 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하고 국가주석이 반포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 - 진출경동식물검역법 - 식품안전법 - 국경위생검역법
2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직책범위에서 제정하는 기본 행정관리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3	부서규장제도 (국무원 부서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과 명령에 의해 부서 직책범위에서 발표하는 규범성 문건의 총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사료사료첨가제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경검험검역차압, 압수관리규정 - 수출입상품수량중량검험감정관리방법 - 식품리콜관리규정 - 수입상품파손검험감정관리방법 - 식품라벨관리규정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진경화물목재포장검역감독관리방법 -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출입경검험검역신고규정

2. 검험검역제도

가. 국가 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국가주석령 67호, 2002.04.28)

□ 총 칙

- 국무원은 수출입상품검험부서(이하 국가상검부서)를 설립하여 전국 수출입상품 검험사업을 주관. 국가상검부서가 각 지역에 설치한 수출입상품검험기구(이하 상검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상품검험사업 관리(2조)
- 수출입상품검험은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보호, 환경보호, 사기행 위방지, 국가안전보호를 원칙으로 국가상검부서에서 검험실시가 필수적인 수출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 조정하여 발표(4조)
 -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세관 감독관리조건 A(입경화물통관단), B(출경화물 통관단) 표기 품목
-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상검기구에서 검험을 실시하며 검험을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은 판매, 사용 및 수출하지 못함. 목록 내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험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화인 혹은 발송인의 신청하에 국가상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검험면제(5조)
- 필수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수출입상품검험은 목록 내 수록된 수출입상품이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합격여부 판정절차는 샘플채취, 검험과 검사; 평가, 검증과 합격보증; 등록, 인가와 허가 등(6조)
- 목록에 수록된 수출입상품은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검험하며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상검부서가 지정한 국외관련 표준에 따라 검험(7조)

□ 수입상품 검험

-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통관 신고지역의 상검기구에 검험 신고. 세관은 상검기구에서 발급한 화물통관증명(입경화물통관단)으로 검사 및 통관허가(11조)
-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상검기구가 규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검험을 받아야함. 상검기구는 국가상검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검험을 완료하고 검험증서 발급(12조)
- 본 법이 규정한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의 수령인이 수입상품의 품질 불합격 혹은 파손, 부족 등으로 대외 클레임시에는 상검기구에 검험 및 증명 발급을 신청(13조)

□ 감독관리

- 상검기구는 상검기구 검험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수입상품 외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샘플추출검사 실시(19조)
- 수출입화물의 수령인, 발송인을 대리하여 검험수속을 받는 대리인은 상검기구에 등록(注册登記). 검험신고 대리시 위탁서 제출(21조)
- 상검기구는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상품에 대하여 증서확인관리 진행, 화물과 증서의 일치여부 및 증서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26조)

2)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국가주석령 53호, 1991.10.30)

□ 총 칙

- 국무원은 동식물검역기구(이하 국가동식물검역기구)를 설립 전국 진출경 동식물검역업무를 관리. 국가동식물검역기구가 각 지역에 설치한 동식물검역기구가 진출경동식물검역을 실시.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전국의 진출경동식물 검역사업을 주관(3조)



- 국가는 동식물병원체(균종, 독종 포함), 해충, 기타 유해생물; 동식물역정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동식물시체; 토양의 진경을 금지, 과학연구 등 특수상황은 사전신청(5조)

□ **진경검역(进境检疫)**

- 동물, 동물제품, 식물종자, 종묘 등 기타번식재료 수입은 사전에 신청하여 검역 심사비준을 받아야함(10조)
- 무역, 과학기술합작, 교환, 증정, 원조 등으로 수입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검역물은 무역계약 혹은 협의서에 중국 법정 검역요구 명시. 수출국가 혹은 지역 동식물검역기구서 발급한 검역증서 첨부토록 명시(11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의 화주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무역계약 등으로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12조)
- 동물을 적재한 운송도구가 세관 도착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예방조치로 운송도구에 접근하는 인원, 운송도구와 오염된 장소에 대하여 소독처리(13조)
- 수입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검역물은 진경세관에서 검역을 실시. 동식물검역기구의 동의하에 하역. 격리검역대상은 동식물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 검역. 진경세관 검역조건 미달 시 국가동식물검역기구는 지정장소로 운송 검역실시(14조)
- 수입동물이 검역불합격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 아래와 같이 처리토록 통지

■ **검역불합격 처리조치** ■

검출사항	처리사항
1급 전염병, 기생충 검출 동물	동일무리의 전반 동물 반품 혹은 도살후 소각처리
2급 전염병, 기생충 검출 동물	반품 혹은 도살후 소각처리, 동일무리 전반동물 반품 혹은 기타 지정 장소에 격리관찰

- 수입동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이 검역불합격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제품은 진경허가(16조)
- 수입식물, 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이 검역에서 식물 위험성병, 충, 잡초 검출 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제품은 진경허가(17조)
- 본 법의 16조항 1~2급 전염병, 기생충과 17조항 식물 위험성병, 충, 잡초 목록은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 발표(18조)
- 본 법의 18조항이 규정한 목록 외 농, 임, 목, 어업에 엄중한 위험이 있는 기타 병충해 검출 시 입경세관의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 규정에 따라 화주 혹은 대리인에 위해요소 제거, 반품 혹은 소각처리토록 통지하며 위해요소 제거 후 합격한 제품은 진경허가(19조)
 - ※ 1998년 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 따라 기존 국가수출입상품검험국,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위생부 위생검역국을 합병하여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으로 신설 검역업무 총괄, 기존 농업부 동식물검역국 업무는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에 위생부 위생검역국 업무는 위생검역 감독관리사로 이전

나. 국무원 행정법규

1)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국무원 령 447호, 2005.08.31)

□ 총 칙

- 국가질량감독검역검험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은 전국 수출입상품검험사업을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험검역국 및 지사(이하 출입경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상품검험사업 관리(2조)
- 국가질검총국은 상검법 4조항 규정에 따라 검험실시가 필수적인 수출입상품목록(이하 목록)을 제정 및 조정 발표(3조)
 -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수출입세칙 세관 감독관리조건 A(입경화물통관단), B(출경화물통관단) 표기 품목

-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목록에 수록된 상품 및 법률, 행정법규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해야한다고 규정한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검험(이하 법정검험) 실시, 법정검험 외 상품은 샘플추출검험(4조)
- 샘플, 선물, 임시 진출경화물 및 기타 비 무역성물품은 검험 면제,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목록 내 수출입상품이 국가가 규정한 검험면제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수령인, 발송인 혹은 생산기업에서 신청하여 국가질검총국이 심사비준 후 검험 면제(6조)
- 법정검험 수출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상검법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검험 실시.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입상품검험사업의 실수요와 국제표준에 따라 수출입상품검험방법의 기술규범과 표준 제정(7조)
-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험실시내용은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 적합여부와 품질, 수량, 중량 등 항목(9조)
-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허가증제도를 실시하는 상품과 국가가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한다고 규정한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증서검사관리 실시, 증서를 확인하고 화물과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10조)

□ 수입상품 검험

- 법정검험 수입상품 수령인은 무역계약,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서와 관련 비준증서로 세관신고지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검험 신고. 세관 통관허가 후 20일내에 본 조례 18조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검험 신청.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 수화인은 세관신고지역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증서검사 신청(16조)
- 법정검험 수입상품 및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경화물통관단에 의거 세관통관수속 진행(17조)
- 법정검사 수입상품은 수령인이 검험신고에서 신고한 목적지에서 검험실시, 대중 벌크상품, 쉽게 부패하는 상품, 원료로 사용하는 고체폐기물, 쉽게 파손 손실되는 상품은 하역지에서 검험실시(18조)

-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외 법정검험 수입상품이 검험에서 인체재산안전, 건강, 환경보호 등 항목 불합격 시 출입경검험검역기구는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제출하여 세관에 서면통지하고 세관은 반품처리통지서에 따라 반품수속 진행, 기타항목 불합격 시 출입경검험검역기구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하고 재 검험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9조)
- 법정검험 외 수입상품이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추출검사에서 불합격 시 본 조례 19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 증서검사관리 수입상품은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검증에서 불합격 시 본 조례 19조항 규정에 따라 처리(20조)

감독관리

- 국가는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위생등록(注册登记)관리를 실시하며 위생등록을 취득한 수출입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식품만 수입 혹은 수출할 수 있음. 위생등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식품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위생등록 신청(32조)
- 수출입식품, 화장품의 경영자 혹은 대리인은 수출입전에 출입경검험검역기구에 라벨내용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 요구와의 부합여부,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험을 진행하고 라벨검험증명을 발급받아야 함(34조)

2) 중화인민공화국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국무원 령 206호, 1997.01.01)

총 칙

Ⅰ 검역실시 물품목록 Ⅰ (2조)

1. 입경, 출경, 국경통과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2.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한 적재용기, 포장물, 바닥재
3. 동식물 역정지역에서 온 운송도구
4. 입경하여 해체한 폐기, 중고선박
5. 법률, 행정법규, 국제조약 혹은 무역계약에 동식물검역을 규정한 기타화물 및 물품

- **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진출경동식물검역사업을 주관, 국가동식물검역국은 전국의 진출경동식물검역업무를 관리하며 각 지역에 설치한 동식물검역기구가 진출경동식물검역을 실시(3조)

□ 검역심사비준

■ 수입동식물 및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검역심사비준목록 ■

구분	
활 동물	사양, 야생 활 동물, 배태, 정액, 수정란, 종란 및 기타 동물유전물질
식용 동물제품	육류 및 제품(장기 포함, 익혀 만든제품 제외), 알류, 우유
비 식용 동물제품	가족류, 모류, 뼈&발굽&각 및 제품, 젤라틴, 누에고치, 동물원성사료 및 사료첨가제, 사료용유청분, 어분, 육분, 골분, 육골분, 유지, 혈분, 혈액 등, 동물성분을 함유한 유기비료
과채류	신선과일, 토마토, 가지, 고추
연초류	담뱃잎, 연초편(烟草薄片)
식량류	밀, 옥수수, 벼, 보리, 흑맥, 연맥, 수수 등
두류	대두, 녹두, 완두, 적두, 잠두, 치크콩
서류	감자, 카사바, 고구마 및 가공제품(감자분 제외)
사료류	밀기울, 콩깻묵, 대두박 등
기타류	식물재배매개체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02년 2호공고 & 2004년 111호 공고

■ 진경검역심사비준 조건 ■ (10조)

1. 수출국가 혹은 지역에 중대 동식물역정이 없어야함
2. 중국의 동식물검역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
3.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간 체결한 양자검역협정(협약, 비망록 포함)에 부합

○ 검역심사비준은 무역계약 혹은 협의서 체결 전에 진행(11조)

■ 진경검역심사비준 신청자료 ■

1.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등록등기증
2.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기업법인영업집조
3. 상무부 비준한 수출입권한 문서, 자격증서 혹은 가공무역 문서
4. 냉동 창고 등록자격증명문서 혹은 등록창고와의 협의서(수입육류)
5. 경내 생산, 가공, 저장기업 등록자격증명, 검역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진경동식물제품은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고과보고, 신청업체와 사용업체 다른 경우 가공계약, 저장협약 혹은 대리수입협약(소시지 외피, 식용 녹용, 녹각, 식량, 두류 등)
6. 반품원인설명, 반품협약, 수출제반증서(반품화물)

자료 :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 진경검역심사비준 절차 ■

1. 신청인 신청표 작성 신청자료와 함께 제출
2. 직속검험검역국 자료접수하여 5일내 자료보충 요구, 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으로 이송
3. 수출입식품안전국 최종심사, 온라인으로 <검역허가증> 혹은 <비준 미확취 통지서> 발급
 ※ 전반 심사비준은 직속검험검역국 신청자료 접수일자로부터 20일내 완성

자료 : 국가질검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

■ 검역심사비준 재신청 상황 ■ (16조)

1. 품종 및 수량 변경시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변경시
3. 입경세관 변경시
4. 검역심사비준 기한 초과시

□ 진경검역(进境检疫)

- 국가는 중국으로 동식물제품을 수출하는 국외 생산, 가공, 저장업체에 대하여 등록(注册登记)제도 실시(17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의 화주 혹은 대리인은 진경 전 혹은 진경시점에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 부류별로 종축, 금 및 정액, 배태 수입은 입경 30일전에 검역신고, 기타동물수입은 입경 15일전에 검역신고, 식물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는 입경 7일전에 검역신고, 동식물성 포장재, 바닥재는 진경 시 검역신고(18조)
- 동식물검역기구에 검역신고 시 검역신고서, 수출국가 혹은 지역정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발급한 검역증서, 산지증서, 무역계약, 신용증,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며 법에 따라 검역심사비준이 필요한 경우 검역심사비준서 제출(19조)

■ 현장검역 규정 ■ (조례 22조항)

구분	검역기준
동물	역병의 임상증상검사; 전염병감염 혹은 동물 사체 발견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의 배합 하에 상황을 조사하여 즉시 처리; 동물의 바닥재, 남은 사료와 배설물은 검역원의 감독하에 화주 혹은 대리인의 위해제거처리
동물제품	부패 변질현상 및 용기, 포장의 안정여부 검사; 요구에 부합되면 하역을 허락하고 포장 불완전, 용기파손 발견 시 화주 혹은 대리인이 정리 후 하역 허락; 상황에 따라 운송도구 관련부위 및 동물제품을 적재한 용기, 외 포장, 바닥재, 오염장소 등에 소독처리 진행; 실험실 검역 수요 시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 식물해충 및 잡초종자가 혼입이 쉬운 동물제품은 동시에 식물검역 실시
식물&식물제품	화물과 포장의 병충해검사; 규정에 따라 샘플 채취; 병충해를 발견하여 확산가능성이 있을시 화물 및 운송도구와 하역현장에 필요한 방역조치; 동물전염병지역에서 수입하거나 전염병과 기생충병원체가 쉽게 혼입되는 동물사료용 식물제품은 동시에 동물검역 실시
동식물성 포장물 & 바닥재	병충해, 잡초종자, 토양 혼입 검사; 관련규정에 따라 샘플채취
기타 검역물	포장의 안정여부, 병충해 오염여부 검사; 포장 파손 혹은 병충해 오염 시 위해제거처리

- 종자용 대종가축의 수입은 국가동식물검역국이 설립한 동물격리검역장소에서 45일간 격리검역, 기타 동물 수입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동물격리검역 장소에서 30일 격리검역(24조)
- 수입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은 중국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및 국가동식물검역국의 관련 구정에 따라 검역 실시(26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은 검역합격 후 입경세관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신고서에 날인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은 날인한 검역신고서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로 세관에 통관신고, 세관은 날인한 검역신고서 혹은 <검역통과통지서>를 근거로 검사 통관(27조)
- 수입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검역에서 불합격 시 동식물검역기구에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 화주 혹은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동식물검역기구의 감독관리와 기술지도하에 위해제거처리, 대외 클레임 필요시 동식물검역기구는 검역증서 제출(28조)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및 기타 행정법규

1. 품목별 검역제도(국가질검총국 행정법규)

가.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총국 령 144호, 2012.03.01)

- 본 방법은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기업에 대하여 등기(注册)관리를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를 실시;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검험 실시; 수출입식품에 대하여 분류 관리를 실시; 수출입 식품의 생산경영자에 대하여 성실관리를 실시(4조)
- 수입식품은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관련 검험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 안전국가표준이 공식 발표 전에는 현행 식용농산물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과 관련 식품산업표준 중 강제집행표준을 근거로 검험 실시. 최초로 수입하며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수입상이 검험검역기구에 국무원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제출, 검험검역기구는 국무원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험 진행(8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기업에 등기(注册)제도 실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국가질검총국에 등록(备案).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등록(备案)요구에 따라 기업의 등록(备案)정보 제공. 등기(注册)와 등록(备案) 명단은 총국 홈페이지에 발표(9조)

■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기(注册)실시 목록 ■

No	명칭	정의	비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물,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불포함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수입식품이 진경동식물검역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진경 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 가능(10조)
- 동식물전염병 혹은 유독, 유해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 수입은 전문 세관을 지정하여 통관 실시. 지정세관조건 및 명단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제정 및 공식 발표(11조)

■ 검험신고 제출자료 ■ (12조)

1.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2. 관련 허가문서
3. 법률법규, 양자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 명시한 수출국가(지역) 관방 검역(위생)증서
4. 최초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은 수입식품라벨샘플과 번역본 제출
5. 최초로 수입하며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은 본 방법 8조항 규정 허가증명문서 제출
6. 수입식품에 동봉되는 기타 증서 및 증명서류
 - * 검험신고 시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수입식품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총 가치, 생산일자(번호) 및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내용을 일일이 신고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내용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의 부합여부 및 품질관련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대하여 검사 진행, 수입식품라벨 및 설명서 중 수상내용, 증서획득, 산지 및 기타내용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16조)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합격증명 취득 전에는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7조)
- 수입식품은 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합격증명을 제출하여 판매, 사용을 허가. 합격증명은 화물의 상품명, 브랜드, 원산지,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번호) 등을 포함. 브랜드, 규격이 없는 경우 무(无)로 표기(18조)
- 수입식품이 검험검역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에서 불합격증명 발급. 안전, 건강, 환경보호항목이 불합격 시 당사자에 폐기를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 기타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처리 진행, 재 검험을 통하여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18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식품의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상은 사전에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등록(备案) 신청(19조)

【 수입상 등록신청 자료 】

1. 수입상등록신청표(进口商备案申请表)
2.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법정대표인신분증명, 대외무역경영자등록등기표 등 원본&사본
3. 기업품질안전관리제도
4. 식품안전 관련 조직기구설치, 부서기능 및 담당 직책
5. 경영코자하는 식품의 종류, 보관장소
6. 2년 내 식품수입, 가공, 판매 종사 경력자는 관련 설명(식품품종, 수량) 제공
7. 자체 검사신고 시 자체검사신고단위등록등기증명서 원본&사본

나.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136호, 2011.06.01)

- 본 방법은 수출입 육류제품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본 방법이 육류제품은 동물 도살체의 식용부분(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말하며 통조림 제품은 불포함(3조)
- 검험검역기구는 법에 따라 수출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험검역 및 감독추출검사를 진행하며 수출입육류제품의 생산가공기업, 수령인, 발송인에 대하여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제도 실시(5조)
- 수입육류제품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여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육류제품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를 제출(7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육류제품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한 등기(注册)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9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육류제품 수입 가능(10조)

- 국가질검총국은 수입육류제품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수입육류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 취득해야함(12조)
- 수입육류제품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한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여 검험검역기구가 인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등록(备案)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에 저장(13조)

■ 신선, 냉동육류제품 포장요구 ■ (14조항)

1. 내, 외포장은 무독, 무해 재료 사용하며 완전하고 손상이 없어야함
2. 내, 외포장에 원산지, 품명, 생산기업등록번호, 생산로트번호표기
3. 외포장에 중문으로 규격, 산지,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 내용 표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측 검험검역표기 추가

- 육류제품의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관련 증서 원본,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15조)

■ 수입육류제품 현장검역내용 ■ (18조)

1. 운송도구 위생청결검사. 온도통제설비 정상작동여부. 온도기록계 요구 부합여부
2. 화물과 증서일치여부 검사.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화물명칭, 수량, 중량, 수출국가 혹은 지역, 생산업체명 혹은 등록번호, 생산일자, 포장, 화물기호,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증서번호, 표기 혹은 봉인표기 등 정보
3. 포장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 부합여부
4. 정량포장 육류제품의 라벨 요구 부합여부
5. 신선, 냉동육류제품은 신선정도, 중심온도의 요구 부합여부, 병리변화여부 및 육안식별가능 기생충, 생활해충, 이물질 및 기타 이상상황 검사, 필요시 증숙(蒸熟)실험

- 수입신선, 냉동육류제품은 현장검험검역 합격 후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19조)

Ⅰ 수입육류제품 검험검역결과 처리내용 Ⅰ (21조)

1. 검험검역 합격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발급 생산, 가공, 판매, 사용 허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 수입육류제품의 컨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명과 등록번호,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2. 검험검역 불합격시 검험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이하 상황은 반품 혹은 폐기처리
 - 1)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없는 경우
 - 2) 수출국가 혹은 지역 관방 발급 관련 증서 없는 경우
 - 3) 등기(注册)를 하지 않은 생산업체 수입육류제품
 - 4)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3. 검험검역을 거쳐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 진행,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4. 대외 클레임시 관련 증명 발급

○ 동물역병 유행국가/지역에서 수입금지 동물 및 그 제품 리스트(2015.11.9.)

국가	역병	수입금지 제품
한국	조류 독감	조류 및 그 제품
	돼지콜레라	돼지 및 그 제품
	구제역	우제(偶蹄) 동물 및 그 제품

※ 자료 : 질검총국(http://dzwjyjgs.aqsiq.gov.cn/fwdh_n/jlgg/2015/201511/t20151112_454220.html)

다.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135호, 2011.06.01)

- 본 방법은 수출입 수산물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본 방법의 수산물은 식용 수생동물 및 제품을 말하며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 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포함하지 않음(3조)
- 수입수산물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 중국과 수출국가 혹은 지역 간 체결한 협의, 의정서, 비망록 등 규정의 검험검역요구; 무역계약에 명시한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함. 국가표준이 없는 수산물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제출한 허가증명문서 제출(8조)
- 국가질검총국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수입수산물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한 등기(注册)관리는 국가질검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10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수산물의 수령인에 대하여 등록(备案)관리 실시, 등록업체만 수산물 수입 가능(10조)
- 국가질검총국은 안전위생 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입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 동물 및 기타 양식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역심사비준제도 실시, 상기제품의 수령인은 무역계약 체결 전에 검역심사비준을 받고 진경동식물허가증을 취득 해야함 (13조)
- 수산물의 수입 전 혹은 수입 시 수령인 혹은 대리인은 수출국가 혹은 지역 정부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정본의 원본, 원산지증서,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인보이스 등으로 수입세관 검험검역기구에 검역신고(14조)
- 검험검역기구는 수령인 혹은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서에 대하여 심사 확인 후 요구에 부합되면 접수, 검역심사비준수량을 심사 후 장부에서 삭제하고 입경화물통관증명 발급(15조)
- 수입수산물은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냉동 창고 혹은 기타장소 저장(16조)

■ 수입수산물 현장검역내용 ■ (18조)

1. 증서 대조 확인, 화물 검사 확인
2. 포장 수입수산물포장기본요구 부합여부 검사 확인
3. 식물성해충이 쉽게 번식하는 수입 염장 혹은 건제수산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실시, 필요시 위해제거 처리
4. 부패변질여부, 이물질함유여부, 건조여부, 피 얼음 존재여부, 서리 과다여부 검사 확인

- 수입 정량포장 수산물의 중문라벨은 중국식품라벨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 및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함(19조)

■ 수입수산물 샘플 검험항목 ■ (20조)

1. 질병을 야기시키는 미생물, 중금속, 농수약잔류물 등 유독유해물질
2. 역병, 기생충
3. 기타 요구 항목

- 수입수산물 검험검역 합격 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발급하여 생산, 가공, 판매, 사용을 허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 수입수산물의 컨테이너번호, 생산로트번호, 생산업체와 화물기호 등 정보 명시. 검험검역 불합격 시 <검험검역처리통지서> 발급, 인체안전, 건강과 환경보호 외 항목이 불합격 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 기술처리 진행, 합격 후 판매, 사용 가능. 당사자가 클레임증명 등 기타 증명 발급을 신청 시 관련증명 발급(21조)

라.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 령 68호, 2005.07.05)

- 본 방법은 진경 신선과일(이하 과일)의 검험검역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진경과일무역계약 혹은 협의 체결 전 국가질검총국에 진경과일검역심사비준 신청,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이하 검역허가증) 취득(5조)
- 화주 혹은 대리인은 검역 신고 시 <검역허가증> 정보와 수출국가 지역 관방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정보를 제출
- 현장 혹은 실험실검역에서 발견된 벌레, 병원, 잡초 등 유해생물에 대하여 감정 진행, 현장에서 추출한 샘플에 대하여 유독유해물질 검측 진행 검험검역결과서 발급(11조)
- 이하 상황발생시 사정에 따라 관련 품종 과일의 수입을 잠시 정지 혹은 관련 과일산지, 과수원, 포장공장으로부터의 수입을 잠시 정지한다(13조)

Ⅰ 진경 과일 수입잠정조치 상황 Ⅰ (13조)

1. 진경 과일 과수원, 가공공장지역 혹은 주변지역에 엄중한 식물역정 발생시
2. 검험검역에서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진경 검역성 유해생물 발견 시
3. 검험검역에서 유독유해물질 함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표준규정 초과 시
4. 중국의 검험검역법률, 법규 및 양자협정 혹은 관련 국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검험검역을 받지 않은 진경과일은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전, 판매, 사용을 금지

마. 한국 대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요구 발표

○ 질검총국 한국 대 중국 포도 수출 관련 검역요구 발표

- 중국질검총국이 리스크 분석결과에 의거 태국, 스리랑카, 한국, 에티오피아 관련 검사검역기관과 협상을 통해 각각 ‘태국 렌우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泰国蓬雾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스리랑카 바나나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斯里兰卡香蕉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한국 포도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韩国葡萄输华植物检疫要求)’, ‘에티오피아 대두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埃塞俄比亚大豆输华植物检疫要求议定书)’ 및 ‘중국 여지 대 한국 수출 검역요구(中国荔枝输韩植物检疫要求)’를 체결하거나 확인했다. 관련 제품 전부 다 검역 허준 절차를 완성하여, 2015년 8월 4일부터 관련 요구에 부합한 태국 렌우, 스리랑카 바나나, 한국 포도 및 에티오피아 대두 대 중국 수출을 허가함

■ 한국 포도 대 중국 수출 검역요구 협정서 ■

1. 법률법규의거

- 가. ‘출입경동식물검역법’, ‘출입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 나. ‘식품안전법’,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다. ‘한국 신선 포도 대 중국 수출검사검역요구’

2. 입국 허준 품목

- 포도(*Vitis vinifera* Linn.), 아래 ‘포도’ 라 함

3. 수출 허가 생산지역

- 한국 포도 생산지역

4. 수출 허가 과수원 및 포장공장

- 대중 수출 포도는 등록된 과수원 및 공장에서 생산해야 된다. 수출 화물 본 협정서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추적하기 위해 등록정보가 ‘명칭, 주소 및 표기코드’ 포함해야 한다. 등록 리스트는 매년 수출계절 전 한국동식물검역국(아래 ‘QIA’ 라함) 중국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아래 ‘AQSIQ’)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허가 리스트가 AQSIQ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5.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 5.1 温室条囊蓟马 *Hercinothrips femoralis*
- 5.2 日本臀纹粉蚧 *Planococcus kraunhiae*
- 5.3 葡萄根瘤蚜 *Viteus vitifolii*
- 5.4 大丽轮枝孢 *Verticillium dahliae*

6. 수출 전 요구

6.1. 과수원 관리

- 가. 매년 포도 성장 시기에 근접한 기간에 실시하거나 인공조사 방법으로 중국에서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필요시 화학적(약제)방제 혹은 생물학적 방제 조치를 취한다. 재배자 혹은 가공공장모니터링 및 농약살포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사용된 화학약품은 등록하여 AQSIQ에 제공해야 한다.
- 나. QIA는 부정기 병충해 방제(살포시간, 종류 및 조제량), 논발위생 관리 등 감독 및 지도해야 한다.

6.2. 포장공장 관리

- 가. QIA는 수확시기에 대 중 수출 포도의 과수원 및 가공공장 검사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등록된 과수원에 봉지가 완전한 포도만 포장공장으로 운송하는 것을 확보한다. 과실은 포도 덩굴에서 직접 따야 되며 낙과 없어야 된다. 봉지 달린 채 가공공장으로 운송, 분류 전 봉지를 벗긴다.
- 나. 포장공장 진입된 과실을 엄격하게 검사해야 되며 모든 병충과실, 기형과실 제거, 되도록 과실에 곤충, 진드기, 썩은 과일,

나뭇가지, 나뭇잎, 식물 잔재 및 토양 등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포도송이 내부 검역성 유해생물 휴대 여부를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발견 될 경우, 해당 과수원 대 중 포도 수출자격 취소하거나 상응하는 해충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충구제 조치는 AQSISQ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 포장상자 내 SO2 량 깔아야 되며 대 중 수출 포도는 해충 없도록 해야 한다.
- 라. 포장 과정 중 각 포장지 샘플링조사 실시한다.
- 마. 대중 수출 포도 별도로 저장, 유해생물 점염 피하기 위해 전용 창고를 사용한다.

6.3. 포장요구

- 가. 포장재료 새것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하여 관련 식물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포장상자 통풍구 있을 경우, 방충 스크린 덮고 해충을 방지해야 한다.
- 나. 각 포장박스에 밀봉 마크를 붙여야 된다. 밀봉 마크는 AQSISQ 및 한국검역주관기관에 등록해야 된다.
- 다. 각 포장박스 위에 영문으로 과일종류, 산지(주, 시 혹은 현), 국가, 과수원 혹은 그 등록번호, 포장공장명칭 및 그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각 팔레트에 중국어로 '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이라고 표기해야 되며 팔레트가 없을 경우, 포장박스 위에 중국어로 '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로 표기해야 한다.

6.4. 수출 전의 검사검역

- 가. 한국수출과일검사검역 일반 절차대로 현장 검사검역 및 실험실 검사검역 실시한다.
- 나. QIA 혹은 QIA 수권자 아래 비례대로 대중 수출 포도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선적운송 포도, 1차수 2% 비례로 샘플링검사 실시, 600송이 이상이어야 된다. 항공 운수할 경우, 1차수 10% 이상 샘플링검사 실시하도록 한다.
- 다.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해생물이 검출되면 해당 차수의 화물 대중 수출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과수원 및 포장공장을 중지시키며 QIA 혹은 QIA 수권자 문제점을 발견될 때까지 개선조치를 실시한다. 조사기록을 보존하여 요구대로 AQSISQ 혹은 중국입국항구 CIQ에 제출해야 한다.

6.5. 식물검역증서 요구

- 검사검역 합격될 경우 QIA 혹은 QIA 수권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컨테이너번호를 명시하여 '해당 차수의 포도는 <한국신선포도 대 중 수출 검사검역요구>에 부합하며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없다' 란 추가성명을 표기한다.

7. 입경 요구 : 출입경검사검역기구 아래와 같은 요구대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7.1. 관련 증명서류 검사

- 가. 한국 대중 수출 포도가 AQSISQ 발급한 '입경동식물검역허가증' 구비 여부를 검사한다.
- 나. 관련 증명서류는 본 요구 6.5 규정에 부합여부를 검사한다.

7.2. 입경 검사검역

- '검사검역공작수첩' 식물검사검역부첩 관련 규정에 의거해 화물에 대한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합격될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8. 요구 미달에 대한 처리

- 8.1. 검사검역 통해 포장은 6.3 관련 규정에 미달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는 입경 금지
- 8.2. 등록하지 않은 과수원 및 포장공장 생산한 포도를 검출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는 입경 금지
- 8.3. 검역성 유해생물 생체가 발견될 경우, 반품, 중계수출, 소각 및 검역처리를 할 것이다. AQSISQ 즉시 QIA 통지하여 해당 과수원 대 중국 포도 수출 임시중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련 검사검역조치를 취한다. AQSISQ는 QIA 취하는 개선조치 평가 결과에 따라 수출임시중지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9. 예비검사

- 본 사업을 시작하기 전, QIA 협조 하에 AQSISQ는 2명 검사인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대 중국 수출 포도 과수원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방제, 포장 및 냉장관리 등 상황을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적어도 본 사업 시작한 초년에 AQSISQ는 해당 연도 대 중국 수출 모든 차수의 포도에 대해 QIA 혹은 QIA 수권자 연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중국에서 중시하는 유해생물 생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차수의 포도가 대 중 수출금지 혹은 개선조치를 취한다. 수입검사검역 상황에 따라 AQSISQ는 추후 수확시기에 검역인원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예비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10. 회고적인 심사

- 한국포도 유해생물 발생한 변화 및 검출 상황에 따라 AQSISQ는 진일보한 위험평가를 할 것이며 QIA와 협상하여 관련 검사검역조치를 조정한다.

* 자료 : 중국품질검독관리검사검역국(2015.08.04./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508/t20150805_446473.html)

▣ 대 중국 수출 검사검역 허가 신선과일 품종 및 수출지역 리스트(2015.10.28.) ▣

수출국가/지역	과일품종
태국	타마린드, 귤, 반려지, 오렌지, 유자, 파파야, 양다래, 구아바, 람부탄, 도금양과, 바라밀, 롱콩, 파인애플, 인삼열매, 바나나, 달리아, 야자, 용안, 두리안, 망고, 여지, 망고스틴
말레이시아	용안, 망고스틴, 여지, 야자, 수박, 파파야, 람부탄
인도네시아	바나나, 용안, 망고스틴, 뱀고구마
베트남	망고, 용안, 바나나, 여지, 수박, 람부탄, 바라밀, 용과
미얀마	용안, 망고스틴, 람부탄, 여지, 망고, 수박, 참외, ziziphsu mauritiana Lam
필리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일본	사과, 배
파키스탄	망고, 감귤
인도	망고, 포도
이스라엘	오렌지, 유자, 감귤, 레몬, 자몽
타지키스탄	체리
대만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 반려지, 파파야, 양다래, 망고, 구아바, 렌우, 빈랑나무, 귤, 유자, 자두나무, 비파나무, 감, 복숭아, 대추, 매실, 레몬, 오렌지, 용과, 멜론, 배, 포도
미국	자두나무(캘리포니아주), 체리(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다호주), 포도(캘리포니아주), 사과, 감귤류(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배(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캐나다	체리
멕시코	아보카도, 포도, 블랙베리 및 산딸기
파나마	바나나
스리랑카	바나나
에콰도르	바나나
콜롬비아	바나나
코스타리카	바나나
우루과이	감귤류
아르헨티나	오렌지, 자몽, 귤, 사과, 배
칠레	키위, 사과, 포도, 자두나무, 체리, 블루베리, 아보카도
페루	포도, 망고, 감귤류(자몽, 귤 및 그 교잡종, 오렌지 및 레몬), 아보카도
프랑스	사과, 키위
스페인	귤, 오렌지, 유자(자몽), 레몬
이탈리아	키위
키프로스	오렌지, 레몬, 자몽, 감귤
벨기에	배
그리스	키위
네덜란드	배
남아공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포도, 사과
이집트	감귤류
모로코	감귤류(오렌지, 귤, 클레멘타인, 자몽)
호주	귤, 오렌지, 레몬, 자몽, 라임, 망고, 사과(태즈메니아주), 포도, 체리
뉴질랜드	귤, 오렌지, 레몬, 사과, 체리, 포도, 키위, 자두나무, 배, 매실
키르기스스탄	체리
북한	댕댕이나무, 블루베리
한국	포도

* 자료 : 질검총국(http://dzwjygs.aqsiq.gov.cn/zwgk/zwjyjjzjwjcjpdwycwz/201510/t20151028_452365.html)

바. 수출입우유제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중국 령 152호 2013.02.01)

- 본 방법은 우유제품(乳品)은 초유(初乳), 생유(生乳)와 유제품(乳制品)을 포함(2조)
 - ※ 초유(初乳)는 출산 후 7일내 짜낸 우유; 생유(生乳)는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직접 짜낸 성분을 개변시키지 않은 우유로 초유, 항생소 사용기간 및 휴약기간의 유증, 변질우유는 생유로 사용하지 못함; 유제품(乳制品)은 우유를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이중 생유를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공한 제품은 생유제품이라 함
- 처음으로 중국에 우유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수의위생과 공공위생의 법률법규체계, 조직기구, 수의서비스체계, 안전위생제어체계, 잔류감독제어체계, 동물역병의 검측감독제어체계 및 중국으로 수출하고자하는 제품종류 등 자료를 제공;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해당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위험이 접수가능범위 내인 경우 관련 검험검역요구 및 관련증서와 증서제출요구를 확정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우유제품의 대 중국 수출을 허용, 쌍방은 의정서를 체결하여 검험검역요구를 확정할 수 있음(5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중국으로 우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외 식품생산기업에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등록사업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경외생산기업은 수출국가(지역) 주관부서의 비준 하에 설립된 기업이어야하며 수출국가(지역)의 법률법규와 관련요구에 부합되어야함(6조)
- 중국으로 수출하는 우유제품은 수출국가(지역)의 정부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위생증서가 있어야하며 증서에는 이하 내용을 증명해야함(7조)
 - 1) 우유제품 원료가 건강한 동물로부터 온 원료임을 증명
 - 2) 우유제품이 가공처리를 거쳐 동물역병을 제거 및 전파하지 않음을 증명
 - 3) 우유제품생산기업이 현지정부 주관부서의 감독관리 하에 있음을 증명
 - 4) 우유제품이 안전하며 식용 가능함을 증명

증서는 수출국가(지역) 정부주관부서의 인장과 권한수여자의 사인이 있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되어야 함. 증서 양식은 국가질량감독

독검협검역총국의 확인을 거쳐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함

- 검역심사허가수속을 받아야하는 우유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하다.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은 법에 따라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하는 우유제품의 종류를 조정하여 공포할 수 있음(8조)
-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우유제품의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에 등록해야한다. 등록을 신청한 수출상 혹은 대리상은 등록요구에 따라 등록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진다. 등록리스트는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 홈페이지에 공포해야 함(9조)
- 출입경검협검역기구는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상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함. 수입상은 식품안전전문기술인원, 관리인원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규장제도가 있어야하며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의 규정에 따라 공상등록등기지역의 출입경검협검역기구에 등록 신청(10조)
-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이하 자료로 세관신고지역의 출입경검협검역기구에 검사 신고(11조)
 - ①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등 필요증빙
 - ② 본 방법 7조 규정에 부합되는 위생증서
 - ③ 처음으로 수입하는 우유제품은 관련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제공, <처음으로 수입>은 경외생산기업, 제품명칭, 배합원료, 경외수출상, 경내수입상 등 정보가 완전하게 동일한 우유제품을 동일 세관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함
 - ④ 처음 수입이 아닌 우유제품은 최초 수입검측보고서 사본과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 요구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처음 수입이 아닌 검측보고항목은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에서 우유제품의 위험검측 등 관련 상황에 따라 확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포해야 함
 - ⑤ 수입우유제품안전위생항목(치병성 세균, 진균독소, 오염물, 중금속, 비법첨가물 포함)이 불합격 시 재차 수입에서 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하며 연 5건의 수입에서 안전위생항목 불합격 사례가

-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재차 수입에서 관련식품안전국가표준에 열거한 항목의 검측보고서 사본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요구하는 항목의 검측보고서를 제공함
- ⑥ 포장 우유제품 수입 시 원문라벨 샘플, 원문라벨 중문번역본, 중문라벨샘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함
 - ⑦ 검역심사허가를 받아야하는 우유제품 수입시 진경동식물검역허가증을 제공해야 함
 - ⑧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우유제품 수입 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⑨ 보건기능과 연관된 경우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⑩ 상, 영예, 인증 등을 취득하여 표기 시 외교경로를 통하여 확인한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함
-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상은 수입한 우유제품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증하며 수입우유제품의 종류, 산지, 브랜드를 공포해야 함. 식품안전국가표준이 없는 우유제품을 수입 시에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면문서 중의 관련요구에 부합되어야 함(12조)
 - 수입정량포장우유제품은 중문라벨, 중문설명서, 라벨이 있어야하며 설명서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함(14조)
 - 수입우유제품은 입경화물검험검역증서 취득 전에 출입경검험검역기구가 지정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하며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의 허가 없이 사용하지 못함(15조)
 - 수입우유제품은 검험검역에서 합격되어 검험검역기구에서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 받은 후 판매 및 사용 가능, 수입우유제품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에는 제품명칭, 브랜드, 수출국가 혹은 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 정보 기입(17조)

- 수입우유제품의 수입상은 우유제품의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수입 우유제품의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번호, 명칭, 규격, 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수출상과 구매자 명칭 및 연락처, 납부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함. 기록은 진실해야하며 기록의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내 수입상의 수입과 판매기록에 대하여 검사 진행(19조)

■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수입유제품의 종류 ■

1. 생유(生乳) (건강한 목축우에서 짜낸 어떤 성분변화도 없는 보통우유)
 - 관련 HS코드 : 0401200000
2. 생유제품 (직접 생유를 주원료로 하고 열처리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 관련 HS코드 : 0403100000, 0406100000, 0406200000, 0406300000, 0406400000, 0406900000
3. 파스퇴르살균유
(양이나 소의 생유를 원료로 하고 파스퇴르식으로 살균한 액체상품)
 - 관련 HS코드 : 0401100000, 0401200000

[주] 위에서 말한 HS코드는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하는 수입유제품 관련 HS 코드를 말하는 것으로, 이 HS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수입식품이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가공방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질검총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실시 요구 조정 공고(2015년 제3호)
 -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질검총국 제152호, 이하 ‘관리방법’이라 함) 2013년 5월 1일부터 실시했음. ‘관리방법’ 실시 협조하기 위하여 질검총국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관리방법’ 관련요구 실시에 대한 공고(질검총국 2013년 53호) 발표했음. 상술한 총국령 및 공고 실시 상황에 의거, 감독 관리를 결합하여 리스트 평가 하에 현재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방법] 실시요구를 아래와 같이 조정
 - 1. 입국 검역검사수속 처리해야 하는 수입 유제품 종류는 기 발표한 생유(生乳), 생유제품, 파스퇴르멸균유 외에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추가했음. 2015년 2월 1일부터 파스퇴르법으로 생산하는 조제우유를 수입할 때 [검역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2. 질검중국이 수입 유제품 검사 및 리스크 모니터링 상황에 의거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그 대리인이 검사할 때 제출하는 검사보고 규정 사항을 적당히 조정 했음(첨부 참조). 2015년 5월 1일부터 처음이 아닌 유제품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본 공고 아래와 같은 규정의 검사 보고를 제출해야 함

■ 처음 수입이 아닌 수입유제품 검측 항목표 ■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파스퇴르 멸균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Pb)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균락총수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GB 4789.4
멸균유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상업무균	GB 4789.26
조제우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상업무균(멸균 공정으로 만드는 제품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2
	대장균군(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황금색 포도상구균(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기타 멸균 공정으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에만 적용)	GB 4789.4
발효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	GB 5009.12
	수은(Hg)	GB/T 5009.17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	GB 4789.4
	효모	GB 4789.15
	곰팡이	GB 4789.15
	유산균(발효 후 가열 처리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35
치즈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리스테리아균	GB 4789.30
	곰팡이 (곰팡이 성숙 치즈 적용 안됨)	GB 4789.15
	효모 (곰팡이 성숙 치즈 적용 안됨)	GB 4789.15
생크림, 그림, 및 무수그림	납	GB 5009.12
	상업무균캔 공정으로 혹은 멸균 공정으로 만드는 생크림에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발효 생크림을 원료로 만드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곰팡이	GB 4789.15
연유	아플라톡신M1	GB 5413.37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상업무균(연유 및 조제 연유에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2
	대장균군(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10 定性检验
	살모넬라균(설탕첨가연유 및 조제 설탕첨가연유에 적용)	GB 4789.4
분유 및 조제분유	단백질	GB 5009.5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납	GB 5009.12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웨이분말 및 락트알부민분말	단백질	GB 5009.5
	회분	GB 5009.4
	아플라톡신M1	GB 5413.37
	납(비탈염 웨이분말에만 적용)	GB 5009.12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초유분말	면역 글로불린 (IgG)	GB/T 5009.194
	납	GB 5009.12
	비소(As)	GB/T 5009.11
	크롬(Cr)	GB/T 5009.123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413.37
	효모	GB 4789.15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곰팡이	GB 4789.15
	균락총수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황금색 포도상구균	GB 4789.10
	살모넬라균	GB 4789.4
우유 주요 원료로 만드는 영아식품	단백질	GB 5009.5
	지방	GB 5413.3
	비타민 A	GB 5413.9
	비타민 D	GB 5413.9
	비타민 E	GB 5413.9
	비타민 K1	GB 5413.10
	비타민 B1	GB 5413.11
	비타민 B2	GB 5413.12
	비타민 B6	GB 5413.13
	비타민 B12	GB 5413.14
	엽산	GB5413.16
	판토텐산	GB 5413.17
	비오틴	GB 5413.19
	콜린(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5413.20
	이노시톨(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5413.25
	타우린(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5413.26
	카르니틴(미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29989
	칼슘(Ca)	GB 5413.21
	린(P)	GB 5413.22
	요오드(I)	GB 5413.23
	셀레늄(Se) (미첨가하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해당 안됨)	GB 5009.93
	철(Fe)	GB 5413.21
	구리(Cu)	GB 5413.21

유제품 품목	검사사항	추천 검사방법
	징(Zn)	GB 5413.21
	상업무균(액상 영유아 조제식품에만 적용)	GB 4789.26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그람음성 간균(0-6월 영아조제식품에 적용)	GB 4789.40 계수법
	황금색 포도상구균(영아조제식품에 적용)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질산염(아채 및 과일 첨가하는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에 적용 안 됨)	GB 5009.33
	아질산염	GB 5009.33
	납	GB 5009.12
	아플라톡신M1	GB 5009.24, GB 5413.37
	납	GB 5009.12
	질산염	GB 5009.33
	아질산염	GB 5009.33
	아플라톡신M1	GB 5009.24, GB 5413.37
	균락총수(활성균(호기성 프로바이오틱 및 통성혐기성균) 첨가하는 제품에 해당 안 됨)	GB 4789.2
	대장균군	GB 4789.3 한천평판배양법
	살모넬라균	GB 4789.4
	황금색 포도상구균(영아 조제식품 기초분말에 적용)	GB 4789.10 한천평판배양법
	그람음성 간균(0-6월 영아조제식품 기초분말에 적용)	GB 4789.40 계수법

* 자료 :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2015.1.8)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정보(2015.11.18. 업데이트)

번호	수입상 명칭	분유브랜드
16	成都纽宏进出口贸易有限公司	With MOM(롯데) 慧智妈咪
18	大连太山贸易有限公司	남양 南阳
49	江苏舜天国际集团机械进出口股份有限公司	임페리얼(남양) 林贝尔
65	青岛索康国际贸易有限公司	아이엠마더(남양) 爱氏妈妈
66	青岛喜恩喜国际贸易有限公司	마더스 케어, All Star, Star 爱智宝' 铭道' 星贝儿
70	厦门森宝集团有限公司	롯데식품 乐天食品
74	汕头市东凯乐有限公司	매일 每日
85	深圳海王食品有限公司	Babikins(넵튠누스) 喜安智
91	威海市民史乳业有限公司	산양분유(롯데), 미은지(파스퇴르) 韩羊' 美恩智
96	烟台库克进出口有限公司	파스퇴르 帕斯特宝石系列
97	烟台每怡进出口有限公司	매일궁, 매일금전명작 每日宫' 每日金典名作
103	浙江农资集团金鸿进出口有限公司	롯데 乐天
144	广州捷唎捷进出口贸易有限公司	파스퇴르 기린아 麒麟儿
181 (추가)	成都高乐儿母婴用品有限公司	롯데식품 柒宝

*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jckspaqj.aqsiq.gov.cn/zytz/201405/t20140529_413978.html)

사. 수입 한국 심비디움 식물 검사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2014.12.2)

○ 질검총국에서 한국 심비디움 검사검역에 대한 공고 발표(2014년 제131호)

- 중국 전문가가 한국 심비디움 유해생물리스크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현지조사 실시 및 수년래 수입 난초 검사검역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한 양국 검사검역기관은 협상을 통해 ‘한국산 심비디움 대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구 협정서’를 체결했음. 2015년 1월 28일부터 한국산 심비디움 대 중국 수출은 ‘수입 한국산 심비디움 식물검사검역요구’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분재 난초를 수입할 경우 동 요구를 참고하여 검역 리스크를 통제함

■ 수입 한국 심비디움 식물 검사검역 요구 ■

1. 관련법률법규

- 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
 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검사법>, <중국인민공화국 수출입 제품검사법 실시조례>
 다. <중화인민공화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및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 심비디움 대 중 수출 식물검역요구에 대한 협정서 >(2014년 10월 28일 체결)

2. 수출제품명칭

- 수입 후 감상용 분재 심비디움(进境后作观赏用途的盆栽介质大花蕙兰), 학명 : *Cymbidium hybrida*,
 영문명 : *Cymbidium*, 아래 심비디움이라 함

3. 심비디움 허가 생산지역

- 한국전역

4. 주요 검역성 유해생물 리스트

<검역성 유해생물 리스트>

1. 菊基腐病菌 *Erwinia chrysanthemi*
2. 番茄斑萎病毒 *Tomato spotted wilt virus(TSWV)*
3. 长针线虫属(传毒种类) *Longidorus(Filipjev) Micoletzky(The species transmit viruses)*
4. 根结线虫属(非中国种) *Meloidogyne Goeldi(non-Chinese species)*
5. 剑线虫属(传毒种类) *Xiphinema Cobb(The species transmit viruses)*
6. 毛刺线虫属(传毒种类) *Trichodorus Cobb(The species transmit viruses)*
7. 洋葱腐烂病菌 *Burkholderia gladiolipv, Alliiicola*
8. 鳞球茎线虫 *Ditylenchus dipsaci*
9. 腐烂茎线虫 *Ditylenchus destructor*
10. 短体线虫属(非中国种) *Pratylenchus spp.(non-Chinese species)*
11. 草莓滑刃线虫 *Aphelenchoides fragariae*
12. 菊花滑刃线虫 *Aphelenchoides ritzemabosi*
13. 非洲大蜗牛 *Achatina fulica Bowdich*

<비검역성 유해생물 리스트>

1. 兰花细菌性褐腐病 *Erwinia cyripedii*
2. 唐菖蒲伯克氏菌唐菖蒲致病变种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3. 建兰花叶病毒 *Cymbidium mosaic virus (CymMV)*
4. 齿兰环斑病毒 *Odontoglossum ring spot virus (ORSV)*
5. 西花蓟马 *Frankliniella occidentalis*
6. 棕榈疫霉 *Phytophthora palmivor*

* 이상 유해생물 리스트 리스크평가 및 전염병 상황 단속 결합하여 조정할 것이며 질검총국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임

5. 수출 전 요구

가. 생산지 관리

- 대중 수출 난초 재식업체가 유효한 유해생물 방지제도 및 조치를 작성해야 되며 추적시스템 설립, 관련 근무일지를 기록해야 됨. 재식 과정에서 중국 중시하는 유해생물에 대해 적당한 모니터, 검사 측정,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대 중 수출 묘포 중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 없도록 함. 한국 측은 상술한 행사 및 조치에 대해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함

- 대중 수출 심비디움 묘포는 해충 방지 설비를 갖춰야 되며 토양 노출하지 않도록 바닥은 시멘트 경화 혹은 비닐, 방수펠트, 모래 깔아야 됨. 재식높이는 비박보다 50cm 이상
- 재식묘포온실은 수출 3개월 전 밀봉해야 되며 유해생물이 난초를 전염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됨
- 관개용수는 수돗물 혹은 적당한 소독 처리된 물이어야 되며 선형 기생충 등 병원성생물이 전염되지 않도록 정기적 수질에 대해 검사를 해야 됨. 재식 매개체가 깨끗해야 되며 반복 사용하면 안되며 또한 혼합 매개체를 사용하면 안 됨. 매개체 사용 전 적당한 제해처리를 해야 됨
- 한국 측은 심비디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재식묘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됨. 특히 수출 3개월 전 매달 2번씩 실험실 검사측정 포함된 유해생물 조사를 해야 됨

나. 등록요구

- 한국 측은 대 중 수출 심비디움 수출업체, 재식업체에 대해 등록을 해야 되며 해마다 수출계절 전 질검총국에 업그레이드된 합격 등록 리스트를 제공해야 됨. 필요 시 질검총국은 한국 등록관리 시스템과 재식업체에 대해 현지조사 실시가능

다. 포장 및 라벨 요구

- 대 중국 수출 난초 포장은 충해를 방지 여건을 갖춘 시설 내에 진행해야 함. 포장 재료가 깨끗하여 위생적이고 미사용여야 되고 또한 중국 관련 식물 검역요구에 부합해야 함
- 포장라벨에 재식 업체 명칭, 등록번호, 수출상 및 '대 중 수출' 라는 정보를 표기해야 되며 포장박스 및 겔 포장주머니 등 재료 위에도 표기를 해야 함
- 나무포장재료 사용할 경우, 국제식물검역조치 제15호 기준 '국제무역나무포장관리통제지침' 에 따라 적당한 제해 처리 및 표기를 해야 됨

라. 수출식물검역 및 증서요구

- 한국 측은 수출 전에 2% 이상 비율로 표본 조사해 증서증빙 검사, 화물확인, 감관검사 등을 실시해야 함. 재식 기간에 점염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의거하여 중국 입국항구 물수 상황에 근거하여 중시하는 유해생물에 대해 실험실 검사측정을 해야 됨. 중국 측은 유해생물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들은 대 중국 수출하면 안 됨
- 한국 측은 검역 합격된 화물에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하여 첨부 성명문 중에 재식업체명칭 혹은 등록번호 및 '해당 심비디움 중국 입국 식물검역요구에 부합하여 중국 중시하는 유행생물 없음' 이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6. 입국요구

가. 검역심사

- 심비디움 입국 전, 수입업체 및 그 대리상은 중국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심비디움 및 재식매개체 입국 식물검역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됨
- 수입 심비디움은 국가질검총국이 지정하는 중요항구에서만 입국가능

나. 관련 증서 검사

- 식물검역증서가 본 요구 제5조 제4항 규정에 부합 여부 검사
- 입국 심비디움 및 재식 매개체가 중국 관련 부서 발급하는 입국식물검역심사허가증서 첨부 여부 확인

다. 입국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

- 대 중 수출 심비디움은 입국항구에 도착할 경우, 중국 '식물검사검역공작수첩' 에 따라 입국 심비디움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할 것이며 본 요구 중 제4조 중시하는 유해생물에 중점을 두고 검역 실시. 포장, 깔고 있는 재료, 컨테이너 등 토양, 해충 및 잡초 씨앗이 붙으면 안 됨

7. 요구 미달 경우 처리

- 가. 토양이 검출되거나 등록되지 않는 수출업체 및 재식업체가 수출하거나, 식물검역증서 혹은 포장라벨 표기정보가 상술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련 화물 입국 불가

- 나. 본 요구 제4조 제시된 중국 중시하는 유해생물이 검출될 경우, 관련 화물을 반품, 소각, 제해처리(유효한 제해처리방법을 한함.) 조치를 취할 것 임.
- 다. 유해생물이 검출될 경우, 질검총국이 한국 측에 관련 재식업체의 심비디움을 대 중 수출을 금지할 것이며 한국 측은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수입 정지할 것임.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수출상, 생산지역 및 모든 한국 심비디움 대 중 수출을 정지시킬 것임

8. 기타 검사검역 요구

- 항구에서 검사검역 합격 후, 심비디움은 지정된 장소에서 재배 및 판매를 허가할 것이며 관련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을 것임. 감독관리 과정에서 중국 중시하는 검역성 유해생물이 발견될 경우, 관련 화물중요를 소각 혹은 제해처리(유효한 제해처리방법에 한함)를 할 것임
- 한국 심비디움 대 중 수출 관련 업체에 실시한 검역 조치의 다름에 따라 리스크별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문제업체 및 문제가 있는 화물에 대해 리스크 경보 및 조치를 강화할 것임. 검역관리를 잘한 업체 및 성실한 업체에 더 편리한 우대조치를 제공할 것임

※ 자료 : 품질감독검사검역국(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4/201412/t20141216_428536.html)

아. 절임채소 위생기준(GB2714-2015) 정식 발표 (2015.10.31.)

-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국가표준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 제8호 공고 정식 발표, 그 중 김치 대 중 수출에 해당된 GB2714-2015 절임채소 위생기준도 포함.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함

Ⅰ 절임채소 위생기준 Ⅰ

1. 범위

본 기준은 절임채소에 적용된다.

2. 전문용어 및 정의

2.1 절임류

신선한 채소를 주요원료로 사용하여 절임 및 절임가공을 통해 제조한 각종 채소제품, 장류절임류, 소금절임류, 간장절임류, 설탕절임류, 식초절임류, 설탕식초절임류, 새우기름절임류, 발효채소류 등이 포함됨

3. 기술요구

3.1 원료요구

채소는 신선해야 하며 원료는 상응되는 식품기준 및 유관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2 감관요구

감관요구는 표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감관요구〉

항목	기준	검사방법
맛, 냄새	특이한 맛과 냄새가 없음	적당량을 흰색 도자기 접시에 올려 자연광(光) 상태에서 색상 및 상태를 관찰하고 냄새를 맡고 온수로 입을 행군 후 맛을 본다.
상태	곰팡이 및 곰팡이 형태의 반점이 없고 정상시력 관찰시 외래 이물질이 없음	

3.3 오염물제한

오염물 제한수치는 GB 2762의 절임채소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 미생물제한

3.4.1 병원균의 제한수치는 GB 29921중 직접 식용할 수 있는 채소과실제품(절임류 포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3.4.2 대장균군 제한수치는 표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 : 대장균군 함량〉

항목	표본채취 ^a 및 제한수치(CFU/g로 표시)				검사방법
	n	c	m	M	
대장균군 ^b	5	2	10	103	GB 4789.3 평판통계법

a샘플채취 및 처리는 GB4789.1에 따름
b비멸균발효형제품은 제외

3.5식품첨가제

식품첨가제의 사용은 GB 2760중 절임류 및 발효류 제품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 미생물 제한량 관련 설명

① 대장균군 : 제품 생산방법의 차등을 고려, 검사수치 결과에 따라 발효형 절임채소를 멸균형과 비 멸균형으로 나누어 관리

- 멸균형 제품의 대장균 기준인 ICMSF 3급 표본추출방안을 n=5, c=2, m=10CFU/g, M=1000CFU/g로 개정하며 검사방법은 GB 4789.3 평판통계법(平板计数法)을 따른다.

- 비멸균형제품은 자연발효를 거쳐 생산되므로 그 제품의 원료는 멸균처리를 거치지 않는다. 검사수치에 따라, 지속적인 발효에 따른 PH수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장균군 수량도 점차 감소됨. 관련 전문가의 연구 및 산업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방법의 특수성 원인으로 이 부류 제품에 대한 대장균 제한량 규정은 필요 없음

② 질병균

- 질병균 제한량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병균제한량〉(GB 29921-2013) 중 즉석과실채소(절임류 포함)의 규정에 따라 실시함

- 살모넬라균 : n=5, c=0, m=0CFU/25g,

-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0CFU/g, M=1000CFU/g

- 평판통계법(平板计数法) 의미

1)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2) c : 허용기준치 보다 크고 최대허용한계치 보다 적거나 같은 최대허용 시료수; 결과가 m보다 크고 M보다 적거나 같은 것 ($m < \text{결과} \leq M$)은 경우 c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3) m : 허용기준치로서 시료가 “만족(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 이하인 제품은 적합으로 판정

4) M: 최대허용한계치(acceptability threshold)로서 시료가 “불만족(unsatisfactory)”으로 간주되는 미생물기준 수치로 결과가 M초과인 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식육가공품의 대장균군 기준은 n=5, c=2, m=10, M=100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결과의 판정은 대장균군수 시험법에 따라 5개 시료를 검사하여

1) 검사결과 1개 시료이상에서 대장균군수가 100초과 시 부적합으로 판정함

2) 검사결과 2개 시료이하에서 대장균군수가 10초과이면서 100이하이고, 나머지 3개 시료가 모두 10이하인 경우 또는 5개 시료 모두 10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중국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http://www.nhfp.gov.cn/sps/s7891/201510/3ba3419aab8a41a09f4f924788f73793.shtml>)

2. 기타 행정법규 및 주요공고

가.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기(注册)규정(총국 령 145호, 2012.05.01)

총칙

- 본 규정은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외 생산, 가공, 저장기업(이하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의 등기 및 감독관리에 적용(2조)
-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기실시목록>(이하 목록)은 국가인감위에서 제정, 조정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발표, <목록>내 부동한 제품유형의 등록 평가심사절차와 기술요구는 국가인감위에서 별도로 제정, 발표(4조)

■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 등기(注册)실시 목록 ■

No	명 칭	정 의	비 고
1	육류	동물 도살체 식용부분	동체, 장기, 부산물 및 이를 원료로한 제품, 통조림 불포함
2	수산물	식용 수생 동물, 식물 및 제품	수모류, 연체류, 각갑류, 두삭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수생포유류동물 등 기타수생동물과 조류 등 해양식물 및 제품을 말하며 활 수생동물과 수생동식물 번식재료는 불포함

자료 : 국가질검총국 2012년 73호 공고

■ 등기조건 ■ (6조)

1. 기업 소재국(지역)의 등기 관련 수의서비스체계, 식물서비스체계, 공공위생관리체계 등은 평가에서 합격되어야 한다.
2.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동식물 원료의 산지는 비 전염병유행지역이어야하며 수출하는 식품에 동식물 전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소재국(지역) 주관부서는 위험제거 혹은 공제가능 증명문서와 관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기업은 소재국(지역) 관련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유효적인 감독관리하에 있어야 하며 위생조건은 중국법률법규와 표준규범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수입식품경외생산기업 등기 신청은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여 혹은 기타 규정 방식에 따라 국가인감위에 추천하며 본 규정 6조항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증명문서 및 자료를 제출(중문 혹은 영문)

- 등기유효기간은 4년으로 경외식품생산기업의 수요에 따라 등기연장 시 등기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를 통하거나 기타규정의 방식으로 국가인감위에 등기연장신청 제출, 기한 내에 등기연장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등기를 말소하고 공고(10조)
-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의 등기사항 변경시 소재국가(지역) 주관부서 혹은 기타규정의 방식으로 신속히 국가인감위에 통보해야하며 국가인감위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1조)
-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경내로 수출하는 식품 외포장에 사실대로 등기번호를 표기해야하며 등기번호 도용 및 양도 금지(12조)

□ 등기관리

- 국가인감위는 <목록>내 식품의 경외생산기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거나 지정기구를 통해 재검사 진행(13조)
- 재검사를 통하여 등기한 경외식품생산기업이 등기요구에 계속 부합되지 않은 경우 국가인감위는 등기자격을 잠시 정지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관련제품의 수입을 잠시 정지시키는 동시에 소재국(지역) 주관부서에 통보. 경외식품생산기업 소재국(지역) 주관부서는 정리 개혁이 필요한 기업을 감독하여 규정기한 내에 정리개혁을 완수하여 국가인감위에 서면보고와 함께 중국법률법규요구에 부합된다는 서면성명을 제출, 국가인감위 심사합격 후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음(14조)

나.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국가표준 7월 1일부터 실시(GB29921-2013)

- 중화인민공화국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에서 2014년 7월 1일부터 중국 위생부에서 최초 제정하는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기준을 정식 실시 예정이며, 신규 기준의 실시는 식품 중 병원균 오염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생물성 질병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입식품은 검사일 기준으로 하며, 신규 기준을 실시하는 날부터 신규 기준대로 검사를 실시
- 본 기준은 유제품, 수산 제품, 곡물제품 등 총 11대 부류 예포장식품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및 호염균 등 5가지 병원균 제한량을 규정하였음

【 식품중 병원균 제한량 】

구분	병원균 기준치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지정하지 않을 경우, 25g당 혹은 25mL당으로 표시)				비고
		n	c	m	M	
육제품 - 익힌 육제품 - 즉석생육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리스테리아균	5	0	0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대장균	5	0	0	-	소고기제품만 적용
수산물 - 익힌 수산물 - 즉석 생수산물 - 즉석 해조류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비브리오균	5	1	0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MPN/g	1,000MPN/g	
즉석 알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양식제품 - 익힌 양식제품(베이커리 포함) - 인힌 속 밀가루, 쌀제품 - 라면, 쌀 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즉석 공제품 - 발효 공제품 - 비 발효 공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	1,000CFU/g	
초콜릿 및 코코아제품	살모넬라균	5	0	0	-	-
과일야채제품(절임 채소 포함)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mL)	1,000CFU/g(mL)	
	대장균	5	0	0	-	
음료(포장된 생수, 탄산음료 제외)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1	100CFU/g(mL)	1,000CFU/g(mL)	

구분	병원균 기준치	샘플링 방안 및 제한량(지정하지 않을 경우, 25g당 혹은 25mL당으로 표시)				비고
		n	c	m	M	
냉동식품 - 아이스크림 - 아이스바 - 식용 아이스, 하드	살모넬라균	5	1			-
	황색포도상구균	5	0	100CFU/g(mL)	1,000CFU/g(mL)	-
즉석 조미료 간장 장류제품 수산물 조미료 - 복합 조미료(마요네즈)	살모넬라균	5	0	0	-	-
	황색포도상구균	5	2	100CFU/g(mL)	10,000CFU/g(mL)	
	비브리오균	5	1	100MPN/g(mL)	1,000MPN/g(mL)	수산물 조미료만 적용
간과류 콩알 제품 - 간과류 및 콩알 소스 - 절인 간과 콩알	살모넬라균	5	0	0	-	-

*1 : 식품종류는 병원균 제한량 적용범위 확정에 사용하며 본 기준만 적용됨

*2 : n은 샘플링 할 때 샘플 수량 / c는 m수치보다 최대한 초과 허가하는 수량 / m은 병원균 기준치의 허가할 수 있는 제한수치 / M는 병원균 기준치의 최대 안전 제한수치

다.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시행세칙> 공고(제43호, 2014.4.14)

- 수입식품 업체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업계 스스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
- 질검총국은 각 지역에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을 설치하여 수입식품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수렴, 심사 및 보고하여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함
- 다음과 같은 정보에 의거하여 연구 판종을 통해 불량기록을 입력함
 - 수입식품 검사검역감독관리 중 식품안전 정보를 발견한 경우
 -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관,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가 보고한 식품안전 정보
 -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 수입식품 불량기록업체 관리 및 통제조치 ■

리스크사전경고조건				조치	리스크해소조건		
불합격 항목유형	제품종류	불합격 항목종류	불합격 회수		공공조건	지정 시간	지정 회수
위생안전 항목	1	1	≥2	불량기록제품종류의 불합격항목 검측보고 제출	1. 조치 후 품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조치실시 시간 ≥ 지정 시간; 3. 조치실시 후 매 식품수입회수 ≥ 지정회수	6개월	5
	1	≥2	≥4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2	≥2	≥8	관련업체 모든 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非위생 안전항목	1	1	≥3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		6개월	5
	1	≥2	≥6	불량기록관련 제품종류와 적합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기입된 항목의 검측보고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2	≥2	≥12	관련업체 모든 제품에 상응한 식품안전국가표준항목의 검측보고 및 관련증명서류 제출(관련표준의 “引用” 인용표준 포함)		12개월	10
기타품질안전Risk				지정제품의 지정항목 검측보고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12개월	10	

■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 실시세칙 ■

1. 총칙

가.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수입식품기업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업계 자율 규율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제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및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중국령 제144호) 등 관련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나. 본 세칙은 수입식품 경외 생산기업과 수출업체, 국내 수입업체 및 대리상(이하 ‘수입식품업체’라 함) 불량기록 사용관리에 적용한다.

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수입식품 불량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며 관련 통제 조치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사검역기구는 수입식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 심사 및 보고하는 책임을 지며 불량기록을 작성하고,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업체 및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수입식품에 대해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2. 불량기록 발생

질검총국과 각급 검사검역기구는 아래 정보에 근거한 검토 및 판정을 통하여 수입식품업체 불량기록을 입력한다.

가. 수입식품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된 식품안전정보

나. 국내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 받거나 업계협회, 업체,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다. 국제조직, 국외 정부기구, 국외 업계협회, 업체 및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식품안전정보

라. 기타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3.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

가. 질검총국은 각급 불량기록 관련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원칙(부속문건 1, 2 참조)을 제정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한다.

나.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관할 지역의 불량기록 취합하여 보고하고, 엄중한 불량기록에 대해서는 즉시 검토 판정을 내려 정보를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다. 질검총국은 전국에서 취합된 불량기록 정보에 대한 검토와 판정을 진행하고, 검토판정 결론에 근거하여 리스크 조기경보 통보를 발표하고,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에 대해 등급별 통제조치를 취하여 이를 공포한다.

〈수입식품 국외생산업체 등록 실시목록〉에 해당되면서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가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총국 2012년 제 145호령)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 내 개선, 등록자격 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하고 질검총국에 보고한다.

4.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가. 국내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공상등기소재지 또는 최근 12개월 내 수입식품 무역 기록이 있는 지역의 직속 검사검역국에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속 검사검역기구와 질검총국의 등급별 리스크 검토 판정을 거쳐,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질검총국은 지체하지 않고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조치를 해소한다.

나. 국외 불량기록 수입식품기업이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 조건(부속문건 1)을 갖춘 경우,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주관부서에 리스크 조기 경보 해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기업 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개선조치 및 조사결과를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실시하여 그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다. 불량기록이 특정 국가 및 지역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서 리스크 조기경보 해소조건(부속문건 2)을 갖춘 경우, 해당 식품안전 주관기관은 문제 원인 조사 결과 및 감독관리 조치 개선 상황을 질검총국에 통보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리스크 검토 판정 업무를 거쳐 리스크가 사라졌거나 현저하게 감소하여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리스크 조기경보 및 통제 조치를 해소한다.

5. 부칙

가. 전에 질검총국과 각 검사검역기구가 발표한 기타 수입식품 통제조치와 본 세칙이 규정한 통제조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통제조치를 실시한다.

나. 기업이 제출하는 검사측정보고는 아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외의 합법적인 검사측정 역량을 갖춘 검측기구와 국내 식품검사검역기구 자격 인정을 취득한 검사측정기구는 검측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질검총국은 검측기구 명단을 확인하여 공포하고, 동태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검사측정보고는 수입식품의 생산일자 또는 생산 차수와 일치해야 한다.

3) 불법 첨가물이 검출되어 불량기록 판정을 받은 경우, 검측보고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수입화장품 불량기록 관리도 본 실시세칙을 적용한다.

마. 본 실시세칙의 해석은 질검총국이 담당한다.

바. 본 세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 〈식품리콜관리방법〉 시행(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12호(2015.3.11.))

○ 국가식품의약국(CFDA)이 〈식품 리콜 관리방법〉(이하 ‘관리법’)을 발표해 올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관리법은 리콜 제도를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식후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식품을 1등급으로 분류, 해당식품의 위험성을 감지한 후 24시간 내 제품 회수를 시작, 근무일기준 10일 내에 모든 제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함. 이어서 식품 섭취로 인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2등급으로, 가짜 상표 또는 허위로 표시된 식품은 3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48시간과 72시간 이내에 해당식품에 대한 회수를 시작, 근무일 기준 20일과 30일 이내에 전량 회수할 것을 규정함. 이밖에도, 생산자와 판매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했으며, 식품생산과정에서 규정에 부합

하지 않은 제품이 검출될 시 즉각 생산 중지를 명령하고, 판매자는 해당식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섭취를 금하는 통지 의무가 있으며, 해당식품의 불안전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함

- 이번에 발표된 관리법은 리콜 등급을 명확하게 분류했을 뿐만 아니라, 긴급회수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 식품범죄에 관한 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중국당국의 리콜 제도를 구체화해 식품안전제도의 법제화를 이루는 동시에 중국의 식품안전규정을 국제관례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보임
 - 중국정부는 지난 2009년 식품안전법을 처음으로 법제화했으며, 지난해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정한 먹거리 공급에 힘쓸 것이라 발표한 바 있고, 아울러 국무원은 최근 ‘2015년도 식품안전중점사업배치계획’을 발표해 종합적인 식품안전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 당국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 중국정부는 식용농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식품가공업, 잔류농약, 수의약품검사까지 대대적인 식품안전캠페인을 벌일 것이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농산품안전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식품안전법 관련 법률을 개정 및 제정하고 식품생산허가제 규정을 보완해 법제화를 통한 식품안전 강화에 앞장설 예정임
- 중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올해 양회(兩會)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진 바, 중국 당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선언해,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방침임

제1조 식품생산 경영관리를 강화, 불안전식품 리스크를 감소 및 피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불안전식품의 생산 경영 중지, 리콜, 처리 및 감독관리를 본 방법에 적용한다.
 불안전식품(不安全食品)의 정의: 식품안전법률법규에 규정된 생산이 금지된 식품 및 인체건강에 해를 미칠 기능성의 증명/증거가 있는 식품

제3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관련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식품안전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에 대한 생산중지, 리콜, 처리의무가 있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전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감독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 감독관리기관 각자 행정구역 내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의학, 독성학, 화학, 시음, 법률 등 관련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식품안전 전문가 팀을 구성,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요소에 의거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를 보완한다.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해당 행정 지역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정보의 수집, 분석 및 처리를 담당하며 식품경영자 주체 책임 구체화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7조 식품산업협의 자율 강화를 독려 및 지원하여 산업 규범을 제정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의무 실행을 유도 및 추진한다. 국민이 불안전식품의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독려 및 지원한다.

제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과정중의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경우 즉시 생산중지하고,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생산중지 및 소비자에게 섭취중지를 알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중지를 하지 않는 경우 현급이상의 식품약품감독기관은 생산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집중거래시장 개설자, 식품경영 장소 대여자, 식품박람회 개최자는 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유효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경영을 중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유효한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터넷 식품경영자가 불안전식품 경영을 중지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제11조 식품경영자가 생산하는 불안전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기타 생산경영자가 통제하는 상태 중 일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불안전식품을 리콜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자체검사, 소비자 고발(제보), 경영자나 감독기관의 고지 등의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이 불안전식품으로 인지한 경우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식약감독기관은 리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식품안전위험정도 및 긴급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리콜 한다.

- 1급 리콜: 식용후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후 24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식약 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 2급 리콜: 식용후 일반적인 건강상 위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지한 후 48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 3급 리콜: 허위표시한 식품은 인지한 후 72시간 내 리콜을 실시하고 현급이상 지방 식약감독기관에 리콜계획을 보고한다.

제14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리콜 한다. 현급이상 식약감독기관은 식품생산자의 리콜계획을 받은 후 전문조직이 리콜계획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리콜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자는 즉시 수정한 후 수정된 리콜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제15조 식품리콜계획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실무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정보

식품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수량 및 리콜 지역

리콜원인 및 위험

리콜등급, 절차 및 기한

리콜통지 혹은 공고의 내용 및 발표방식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 및 책임

리콜식품의 처리조치, 비용부담 상황

리콜의 예상효과

제16조 식품리콜공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식품생산자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실무담당자, 연락처, 메일주소 등

식품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등

리콜원인, 등급, 시작하는 기일 및 끝나는 기일, 구역범위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의 의무 및 소비자 반품과 보상의 절차

제17조 불안전식품이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리콜공고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성급 주요 매체에서 발표해야 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리콜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와 링크해야 한다. 불안전식품은 2개 이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리콜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및 중앙 주요매체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18조 1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발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2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생산자는 발표 후 2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3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발표 후 30 근무일 이내에 완료한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 현급이상의 식약감독기관의 동의를 거쳐 식품생산자는 리콜시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공포한다.

제19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생산자 불안전식품 리콜 사실을 인지한 후 불안전식품의 구매, 판매를 중지하여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경영 장소에 잘 보이는 위치에서 생산자가 발표하는 공고를 붙여야 되며 식품생산자 리콜 전개를 협조해야 한다.

제20조 식품경영자가 자체 원인으로 인한 불안전식품 법률법규의 규정대로 경영 범위 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 불안전식품 리콜 하는 것을 공급상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즉시 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리콜 통지 혹은 공고 중 특별히 자체 원인으로 식품불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걸 표기를 해야 한다.

제21조 생산자가 확정 못하거나 파산 등 원인으로 불안전식품을 리콜 할 수 없을 경우, 식품경영자가 해당 경영범위 내 자발적 불안전식품을 리콜 해야 한다.

제22조 식품경영자가 불안전식품 리콜 절차는 식품생산자 불안전식품 리콜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다.

제2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 중지, 리콜 등 원인으로 시장에서 퇴출하는 불안전식품에 대하여 보완, 무공해 처리 및 소각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생산 경영자가 법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대로 불안전식품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불법으로 비식용 물질, 부패 변질, 병사된 가축 폐기물을 첨가하는 인체 건강 및 생명을 해치는 불안전식품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즉시 그 자리에서 소각해야 한다. 소각 여건을 갖추지 않을 경우, 불안전식품 생산경영자가 집중 소각해야 한다. 식품생산자가 집중 소각하기 전에 현급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5조 라벨, 표기 등 식품안전기준에 미달로 리콜 된 식품은 식품생산자가 보완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상태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에게 보완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26조 불안전식품을 무공해 처리를 하여 자원 재활용 할 수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에 대한 처리방식을 확정 못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하여 평가의 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사실대로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하는 불안전식품의 명칭, 상표, 규격, 생산기일, 번호, 수량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관기한은 2년 이상이다.

제29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불안전식품을 발견할 경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지하여 생산경영 중지 혹은 리콜, 관련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제30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불안전식품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조사 분석을 전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상황을 현장에서 감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하는 불안전식품이 비교적 높은 리스크가 존재할 경우,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 끝난 후 5개 근무일 내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33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생산경영자가 정기적 혹은 부정기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하는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리보고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하는 조치가 식품안전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걸로 판단되면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생산경영자 보다 더 유효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처리한다.

제35조 식품안전 리스크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하여 현급이상 지방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조기 경보를 발표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 생산을 중지시켜 소비자에게 불안전식품을 식용 정지 제시를 해야 한다.

제36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을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37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의 불안전식품의 생산중지, 리콜, 처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안전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의 제8조의 제1항, 제12조의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제1항, 제21조, 제23조의 제1항, 제24조의 제1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생산경영을 중지하지 않거나 자발적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시한 내 리콜하지 않거

나 리콜계획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리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불안전식품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를 하여 1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식품경영자가 본 방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생산자가 불안전식품 리콜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를 하여 또한 5,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13조, 제24조 제2항,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해당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불안전식품 처분을 명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거절하거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이 경고하여 또한 20,000 위안 이상 3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방법 제28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불안전식품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상황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해도 법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기타 법률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자가 자발적 불안전식품을 생산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 조치를 취하여 위해를 해소하거나 감소할 경우,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한다. 비교적 경미한 위법 또한 즉시 시정하여 위해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행정 처벌하지 않는다.

제44조 현급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본 방법에 규정하는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나쁜 결과를 일으킬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담당하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담당자에게 행정 처분을 한다.

제45조 식품, 식품첨가제 및 보건식품은 본 방법에 적용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도매, 소매시장 혹은 생산가공업체에 들어가는 식용농산물의 경영 중지, 리콜 및 처분은 본 방법 참조하여 이행한다.

제46조 본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0053/115580.html>)

마.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최신 수정,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중국 신광고법 출범, 보건식품 및 주류 관련 규정 강화

- 1994년 광고법을 반포한 후 처음으로 수정한 것으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공상기관에 접수된 보건식품 신고 사건이 총 201만 건, 보건식품 중에는 면역력 제고 효능인 보건식품은 36.2% 차지, 신고원인은 대부분 허위 광고 및 품질 문제임. 그래서 신광고법은 보건식품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켰으며, 적발 시 부과하는 벌금도 1994년판 광고법과 비교하면 10~20배 올랐음
- 최신 수정된 광고법 중 보건식품 및 주류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제18조 보건식품 광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효능 및 안전성의 확인 혹은 보장할 경우
2. 질병예방 및 치료기능
3. 광고제품은 건강보장 필수 표시하거나 암시할 경우
4. 약품 혹은 기타 보건식품과 비교할 경우
5. 홍보대사를 이용하여 추천하거나 증명할 경우
6. 법률, 행정법규 금지하는 기타 내용

보건식품 광고는 명확히 '본 제품 약물 대체 불가' 표기해야 됨

제23조 주류광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음주를 유도, 권하거나 무절제하게 홍보할 경우
2. 술을 권하는 동작이 나타날 경우
3. 차, 배 및 비행기 운전하는 장면이 나타날 경우
4. 음주가 긴장 및 불안 해소, 체력 증가 등 효능을 명시 혹은 암시할 경우

제40조 미성년에게 대중매체에서 의료, 약품, 보건식품, 의료기계, 화장품, 주류, 미용광고 및 미성년 건강에 안 좋은 온라인게임을 발표하면 안 되며, 14세 미만 미성년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광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됨

1. 미성년이 부모에게 광고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 달라고 타일러 유도할 경우
2. 불안전 행위 모방을 일으킬 때

제57조 본 법 제40조 위반 할 경우, 공상국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발포 금지를 명령하여 광고주에게 20만 이상 100만 이하 벌금을 부과함. 정도가 심할 경우, 영업집조를 폐지시켜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허준문서를 취소, 1년 내 동 제품의 광고심사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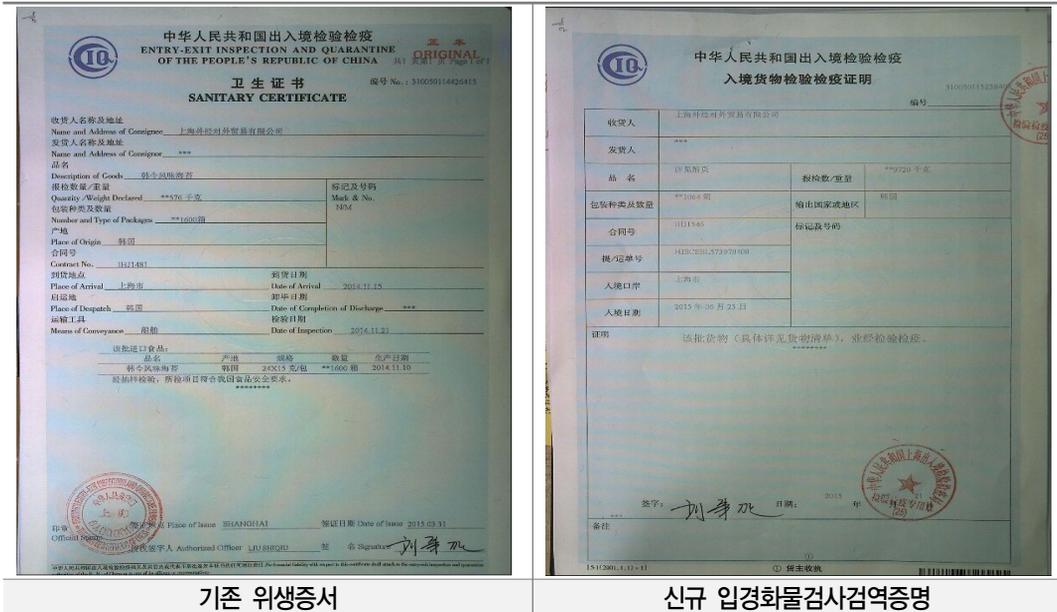
제58조 본 법 제18조 및 제23조 위반 할 경우, 공상국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광고발포 금지를 명령하여, 광고주 상응한 범위 내 영향 해소를 명령하여, 광고비용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광고비용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정도가 심할 경우, 광고비용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광고비용 계산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을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영업집조를 폐지시켜 광고심사기관이 광고심사허준문서를 취소, 1년 내 동 제품의 광고심사신청을 접수하지 않음

자료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WS01/CL0784/118160.html>)

바.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발급에 대한 공고(2015년 제91호) 발표

- 질검총국에서 수입식품, 화장품의 검사검역증서 발급을 규범화하여 검사검역증서 발급 통일성 및 엄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동식물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증서발급, 문구규범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 증서종류 : 수입식품, 화장품 검사검역 합격 혹은 검사검역 불합격, 추후 유효적인 조치를 취해 합격해서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을 받을 경우, 더는 '위생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 증서문구 : 수입식품, 화장품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 발급 시, 질검총국에서 요구하는 내용 외에 증명 칸에 통일적인 증명문구 '상술한 화물 검사검역감독 관리 통과, 수입을 허가함(上述货物业经检验检疫监督管理, 准予进口)

- 본 공고 발표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출입경검사검역사증관리방법’(국질검통 [2009]38호)이 본 공고와 불일치할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기존 위생증서

신규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

* 자료 : 중국품질검독관리검사검역국(2015.08.10.)
 - 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zjgg/2015/201508/t20150810_446735.html

사. <중화인민공화국 新식품안전법> 10월 1일부터 시행

- 2015년 4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수정된 '식품안전법'을 공포하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신'식품안전법'은 당초 104조에서 50조를 추가하여 154조로 변경되었음. 8가지 제도 구축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며 가장 엄격한 전 과정 감독제도 수립

【 중국 식품안전 관련 법 제정 추이 】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 관리조례 (1979)
 - 중국의 식품안전 관련 최초 행정법규로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토대로 제정한 규범성 문건
- 식품위생법(시행) (1982)
- 식품위생법 (1995)
 - 총 9장 57조로 구성, 현 식품안전법의 전신
- 식품안전법 (2009)
 - 총 10장 104조로 구성, 식품 단계별로 감독기관이 존재하는 분산형 감독체계를 명문화

○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 수입되는 식품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 검사합격증명서류 첨부 필수
- 중국 식품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 시, 수입업체는 국제표준 또는 생산국의 식품안전표준, 식품검사결과, 생산국의 합법적인 생산증명 제출 필수
- 수입업체의 해외 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 수립 필수

※ 수입식품이 중국의 법, 법규, 식품안전표준 등을 이행하는지 심사

○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수출업체, 해외식품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수입산 식품이 본 법, 중국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수입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중국 출입국검사검역부문은 식품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 안전상황 관련 평가 및 심사 진행 가능, 평가와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검사검역 요구를 정할 수 있음

○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 특히 위탁, OEM, 소포장 방식으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거나, 동일한 조제방식으로 각기 다른 브랜드의 영유아 조제분유를 생산을 금지

※ 영유아분유 생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으로 규정

국가는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원료의 입고로부터 완성품 출고까지 전반과정에 대하여 품질관리하고 출고한 영유아조제식품에 대하여 차수로 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을 보증한다.

영유아조제식품에 사용하는 신선우유, 보조원료 등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등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영유아 생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임을 보증해야 한다.

영유아조제식품 생산기업은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제품배합방법 및 라벨 등 사항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기(备案)해야 한다.

위탁, 주문자상표부착, 분할포장 방식으로 영유아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으며 동일 기업에서 동일한 배합방법으로 부동한 브랜드의 영유아조제분유를 생산할 수 없다.

○ 인터넷 쇼핑몰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타오바오, 1호점 등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인터넷 쇼핑몰 영업자에 대해 실명 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함

-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제3자 플랫폼 제공자의 연대책임과 선배상을 의무화

※ 기존 온라인전자상거래 특히 B2B상거래에서 난무하는 가짜식품, 모방식품에 대한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제시함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에 입점하는 식품경영자에게 실명등기를 요청하고 인터넷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에 의해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증의 진실성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식품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 시 즉시 그 행위에 대해 제지하고 동시에 인터넷 거래 플랫폼 제공자의 소재지 현급 식품약품안전관리부문에 보고하고 엄중한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플랫폼 서비스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식품구매 후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손해를 볼 경우 인터넷식품경영자 혹은 식품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식품경영자의 정확한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 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플랫폼서비스제공자는 손해배상을 한 후 인터넷식품경영자 혹은 생산자에게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속을 했을 경우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가 본 조항의 1.2항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이 손해를 초래할 경우 연대책임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

- 관련업계의 책임 및 처벌 강화
 - 불법 첨가물 등 안전사고는 5~10배 벌금을 물릴 수 있는 현행 규정을 15~30배로 대폭 인상하여 관련범죄를 근절하고, 심각한 범죄 시 식품업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소비자가 부적합 식품으로 손실을 본 경우, 경영자 또는 생산자에게 손실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상을 요구받은 자는 소비자에게 먼저 배상 후,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 청구
- 기업처벌 강화
 - 허가증이 취소된 기업의 책임자는 5년간 식품생산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을 처벌 받은 자는 영원히 종사할 수 없음
- 정부담당자 문책강화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결과가 심각한 경우 면직처분함

- 신고 포상 및 책임보험제도 마련

- 책임보험제도 : 식품산업 관련 기업이 일정 액수의 식품안전보험비를 납부

○ 보건식품 관리강화 및 제도변경

-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
-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
 - ※ 등록(注册) : CFDA(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의 심사를 요함(까다로움)
 - ※ 신고(备案) : 신고제도로 등록(注册)에 비해 용이

국가는 특정보건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성명하는 식품(이하 보건식품)에 대하여 엄격히 감독, 관리 한다. 보건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혹은 만성 위해를 주면 안 되며 라벨과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야 하고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적합한 균종, 적합하지 않은 균종, 기능성분 혹은 상징성 성분 및 성분함량 등을 명시해야한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과 설명서에 일치해야한다.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수출국가 주관부서에서 출시, 판매를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해야 한다. 보건식품이 주장하는 보건기능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보건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기타식품 생산에 사용하지 못하는 물질목록(이하 보건식품 원료목록)과 보건식품이 성명 가능한 보건기능목록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및 국가중의약관리부서와 연동하여 제정 및 조정하여 발표한다.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해야 한다. 단 처음으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이 비타민 보충제, 광물질 등 영양물질인 경우 출시판매에 앞서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고(备案)한다. 기타 보건식품(신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보건식품 혹은 처음 수입이 아닌 보건식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신고(备案)관리를 실시한다.

보건식품 등록(注册), 신청인은 보건식품의 연구개발보고, 제품배합방법, 생산공정, 안전성과 보건기능 평가, 라벨 설명서 등 자료와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술심사 평가를 조직하여 안전과 기능이 성명한 요구에 부합되면 등록을 승인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시 등록불가와 함께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한다. 신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에 등록을 허가한 경우 기 신원료를 적시에 보건식품원료목록에 넣어야한다.

보건식품 신고(备案), 등기인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제품배합방법, 생산공정, 라벨, 설명서 및 제품 안전성과 보건기능을 표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보건식품의 등록인, 등기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을 책임진다. 성급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사회에 등록 및 등기한 보건식품 목록을 발표해야한다.

3. 검험검역 관리

가. 검험검역 형식 및 방법

□ 법정 검험검역

- 법정 검험검역은 “수출입상품검험법”과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품검험검역법”과 그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과 그 실시세칙,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출입국 인원, 화물, 운송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험검역물(통칭: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해 검험, 검역, 감정 등 검험검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일컫음
- 수출입상품의 법정 검험검역은 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약칭: 법정검험검역목록)에서 기재되어 있음

□ 검험검역 형식

- 수출입식품은 법정 검험검역 상품으로서 주로 자체 검험을 위주로 하며 기타 수출입상품의 공동 검험, 위탁 검험과 인가 검험형식을 참조할 수 있음
- 자체검험
 - 자체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자체 기술력(검사설비와 검사인원을 포함)을 이용하여 자체로 샘플 추출, 샘플 제작과 전체 항목의 검험을 진행하는 방식임
 - 위생, 환경보호 등 사회 공익의 상품 및 대외무역계약이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증서로 가격을 계산 및 결산할 것을 요구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자체 검험을 채택
- 공동검험
 - 공동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조직에 의하여 출입국검험검역기관과 수출 생산기업, 수입 화물 인수부서 또는 관련 업체가 규정한 표준과 방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출입상품의 샘플 추출과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임
 - 공동 검험은 수출입상품 검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임

○ 위탁검험

- 위탁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상품 검험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험자격이 있는 국내외 기타 검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또한 그 검험 결과에 의해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명을 발급
-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어떤 상품 또는 검험항목에 대해 검사설비 또는 검사방법이 결핍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생산, 과학연구, 교육기관(업체)의 시험실 또는 인증을 받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외 검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인가검험

- 인가검험은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일부 수출생산기업 또는 수입 화물 인수기관의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에 대해 인가하며 그 검험결과에 대한 샘플 조사를 한 기초에서 인가를 받은 검험기관 또는 검험인원의 검험결과에 의하여 통관 또는 상품검사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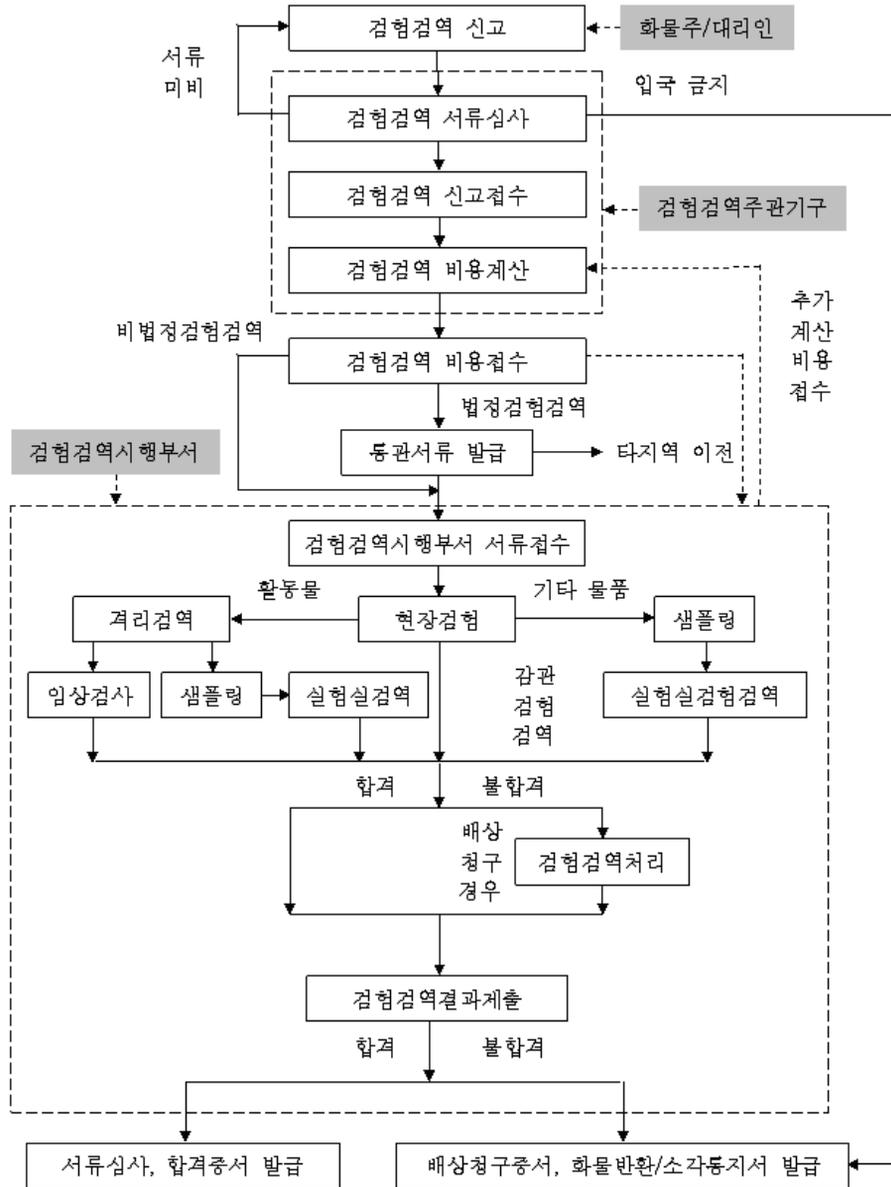
□ 검험검역 방법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방법은 ① 각종 방법으로 식품의 영양, 화학성분과 특성 등 각종 품질특징 및 안전, 위생요구와 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 ② 각종 방법으로 저장운송, 하역과정에서의 상황 및 포장, 운송공구의 적재, 위생조건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분류
-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샘플 추출 및 실험실에서 진행하며 두 번째 방법은 대부분 현장에서 진행하고 일부 실험실의 검험으로 진행

나. 검험검역 절차 및 제도

□ 수입화물의 검험검역

■ 수입화물 검험검역절차 ■



□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

1) 검험검역 범위

구 분	검험검역 대상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 식품첨가제 - 식품용기 - 포장재료 - 식품용공구 및 설비 -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수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식품 - 식품첨가제

2)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수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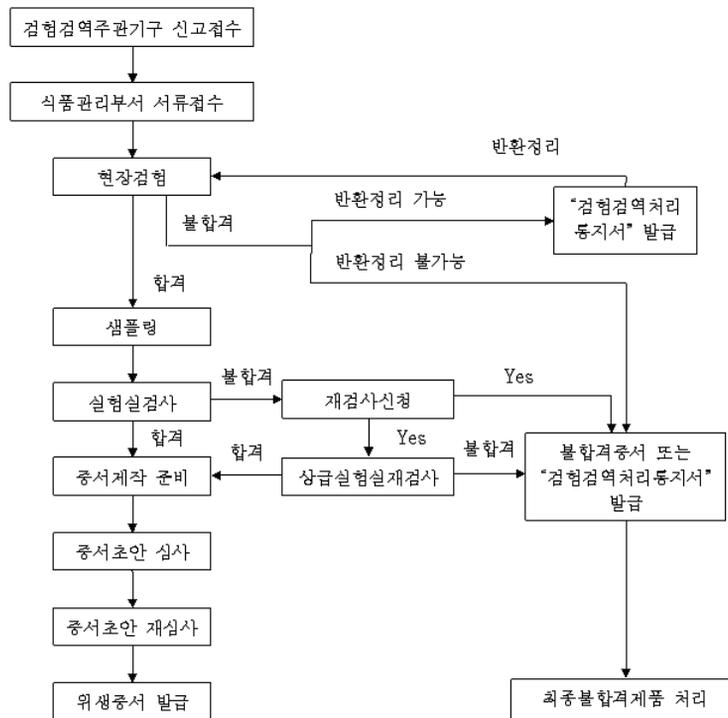
3) 검험검역 신고기한

구 분	신고기한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 종자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 수정란을 수입할 경우	입국 30일 전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입국 15일 전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입국 7일 전
입국화물의 대외 배상청구에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배상청구 유효기간의 최소 20일 전

4) 검험검역제도 위반시 제재조치

구 분	관련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의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 또는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제품 신제품을 최초로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 불법 생산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5만 위안 벌금 -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10배 벌금 -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위생등기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수입증지를 명령 - 불법소득을 몰수 - 상품가치의 10~50% 벌금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	- 시정을 명령 및 경고 - 거절할 경우, 2천~2만 위안 벌금 - 엄중할 경우, 생산중지를 명령, 허가증 취소

■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



다. 검험검역 관련기관

1)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전국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수출입 동·식물 검역과 인증 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사무청, 법규사, 품질관리사, 계량사, 통관업무사, 위생검역감독관리사, 동식물검역감독관리사, 검험감독관리사, 수출입식품안전국, 특종설비안전감찰국, 제품품질감독사, 식품생산감독관리사, 법률집행감독검사사, 국제합작사(WTO사무실), 과학기술사, 인사사, 계획재무사, 감찰내부감사사, 기관당위원회와 퇴직간부국 등 20개 사(청, 국)로 이루어짐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국가표준화관리국)에 대한 관리를 진행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인증인가업무를 관리, 감독, 종합 협조하는 주관부서임
-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아 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통일적으로 전국 표준화업무를 관리하는 주관부서임

3)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직속 사업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기관서비스센터, 정보센터, 국가검험검역표준과 기술법규 연구센터, 중국섬유검험국,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중국표준화연구원, 중국계량과학연구원, 중국품질인증센터, 중국합격평가국가인가센터, 중국특종설비검사연구원, 인력자원개발교육센터, 중국품질신문사, 중국국문시보신문사, 중국표준출판사와 중국계량출판사 등 15개 직속 사업기관을 설치하여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정책결정과 실시에 있어 기술 등을 지원 제공

4)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소속 기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중국출입국검험검역협회, 중국국제여행위생보건협회, 중국품질검험협회, 중국계량협회, 중국인증인가협회, 중국표준화협회, 중국계량측정학회, 중국위조방지협회, 중국설비감리협회, 중국품질관리행촉진회 등 10개 소속기관을 설치

5)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직속 출입국관리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하고 항구와 화물 집산지에 약 300개 분지국과 200개 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직식 관리를 진행

6) 성급 기술감독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품질기술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하고 약 2,800개 행정부서를 설치

7) 국가수출입식품안전국

- 2001년 수출입 식품과 화장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식품안전국을 설립하여 수출입 식품, 화장품 안전의 관리업무를 책임짐

제3절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1. 웹사이트

- 중앙인민정부 : <http://www.gov.cn>
-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세관총서 : <http://www.customs.gov.cn>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http://www.cnca.gov.cn>
- 농업부 : <http://www.moa.gov.cn>

2. 관련법규

구분	주요법규
법률 (전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 - 진출경동식물검역법
행정법규 (국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 진출경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부서규장제도 (중앙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식품경외생산기업등록관리방법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수출입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수출입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 진경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진출경유전자변형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제3장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가. 식품라벨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령 102호, 2008.09.01)

□ 총 칙

-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표기와 관리에 적용(2조)
- 본 규정의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에 부착, 인쇄, 표기하여 식품의 명칭, 품질등급, 중량, 식용 혹은 사용방법, 생산자 혹은 판매자 등 관련 정보를 나타내는 문자, 부호, 수자, 도안 및 기타 설명의 총칭(3조)
- 국가질검총국은 직책범위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조직하며 현급 이상 지방질량기술감독부문에서 관할지역 식품라벨 감독관리사업을 책임(4조)

□ 식품라벨의 표기내용

- 식품명칭 :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표명하는 식품명칭을 표기(6조)

■ 식품명칭 표기요구 ■

1. 국가표준, 산업표준이 식품명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명칭을 사용
2.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오해와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상용명칭 혹은 속명을 사용
3. 창신, 특이, 음역, 메이커, 지역속어, 상표 등 오해가 쉬운 식품명칭을 사용시 식품명칭 옆에 동일 글자크기로 1~2항이 규정한 명칭 혹은 분류명칭을 표시
4. 2종 혹은 이상 식품을 혼합하여 외관이 균일하여 호상 분리가 어려운 식품은 식품의 혼합속성과 분류명칭을 반영하는 명칭을 사용
5. 동, 식물을 원료로 특정 가공공정으로 제조하여 기타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정을 모방한 식품은 명칭 앞에 인조(人造), 모방(仿) 혹은 소(素) 등 문자를 붙여야하며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분류명칭을 명시해야함

- 산지 : 식품 산지 표기(7조)
- 생산자&주소표기 : 법에 따라 등록, 등기한 품질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표기(8조)

■ 생산자&주소 기타규정 ■

1.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본사 혹은 자회사는 각자 명칭과 주소로 표기
2. 독자 법률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사 혹은 생산기지는 본사와 지사 혹은 생산기지명칭, 주소 혹은 본사 명칭과 주소로 표기
3. 위탁생산으로 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생산허가증관리를 하는 식품은 위탁기업에 관련 생산허가증이 있어야하며 양자명칭, 주소 혹은 위탁기업의 명칭과 주소로 표기
4. 분할포장(分裝)식품은 분할포장업체의 명칭주소를 표기하고 분할포장(分裝)문자 명시

- 생산일자&유통기한표기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은 선명하게 표기해야하며 특수저장 조건 표기. 알콜함량 10%(포함)이상 음료주, 식초, 식염, 고체설탕은 유통기한 표기면제가능. 일자표기방법은 국가표준 규정 혹은 년, 월, 일로 표기(9조)
- 정량포장식품 내용량 표기 : 고체와 액체가 각각 포함된 식품은 내용량 외 고형물 함량 표기.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동일 포장면에 표기. 내용량은 <정량포장상품계량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표기(10조)
- 배합원료 표기 : 배합원료는 생산가공시 사용량 순서에 따라 표기. 감미료, 방부제, 착색제를 식품에 직접 사용시 식품첨가제항목에 명칭표기. 기타 식품첨가제 사용 시 명칭과 종류 혹은 코드 표기(11조)
- 집행표준 표기 : 집행한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번호 혹은 등록된 기업표준번호 표기(12조)
- 식품집행표준에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공정 표기를 요구시 식품라벨에 표기(13조)
- 생산허가증관리 식품은 식품라벨에 식품생산허가증번호와 QS마크 표기(14조)
- 비 식용제품이 혼입되어 부주의로 인체상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라벨에 경고표기와 함께 중문경고설명 표기(15조)

■ 중문설명을 표기해야하는 상황 ■ (16조)

1. 의학임상에서 특수사용자에서 쉽게 위해를 조성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
2. 이온화 방사선 혹은 이온화 에너지 처리를 한 경우
3. 유전자변형식품 혹은 법정유전자변형원료가 함유된 경우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에 중문설명을 규정한 경우

○ 명칭 혹은 설명에 <영양(营养)>, <강화(强化)> 표기시 국가표준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양소와 칼로리를 표기(17조)

■ 식품라벨의 표기 금지사항 ■ (18조)

1. 질병예방, 치료작용 명시 혹은 암시
2. 비 보건의식품이 보건작용 명시 혹은 암시
3. 사기 혹은 오도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혹은 소개
4. 제품 설명서에 근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5. 문자 혹은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차별성 묘사
6. 국기, 국장 혹은 인민폐 사용
7. 기타법률, 법규와 표주이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

■ 식품라벨의 표기 위법행위 ■ (19조)

1.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조 혹은 허위표시
2. 식품산지위조, 기타 생산자의 명칭, 주소 위조 혹은 사칭
3. 생산허가증 표기와 번호 위조, 사칭, 변조
4. 법률, 법규가 금지한 기타행위

□ 식품라벨의 표시형식

■ 식품라벨의 표기형식 ■

1. 식품라벨은 식품 혹은 포장과 일체로 분리되지 말아야함(20조)
2. 식품라벨은 최소 판매단위 식품 혹은 포장에 직접 표기(21조)
3. 한 개 판매단위 포장에 부동한 품종, 다양한 독립포장 식품이 포함된 경우 매개 독립포장의 식품 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22조)
4. 식품라벨은 분명하고 선명해야함(23조)
5. 식품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 단 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중문과 외국문자 동시 사용 가능하며 외국 문자는 중문과 대응관계를 이루고 크기는 ≤중문, 단 등록상표는 제외(24조)
6. 식품 혹은 포장 최대표면면적>20cm²인 경우 식품라벨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수자의 높이는 1.8mm보다 커야하며 최대표면면적<10cm²인 경우 식품라벨에 식품명칭,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표기내용은 규정에 따름(25조)

나.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2년 27호 공고, 2012.06.01실시)

□ 총칙

- 본 규정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설명서 포함)의 검험과 감독관리업무에 적용(2조)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은 전국의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 감독관리업무를 주관.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경검험검역기구(이하 검험검역기구)는 관할지역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를 책임(4조)

□ 라벨검험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 제공자료 ■ (6조)

1. 원본 라벨 샘플과 번역본
2.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 샘플
3. 라벨에 표기한 수입상, 경소상 혹은 대리상의 공상영업집조 사본
4.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에 내용을 강조, 예로 수상, 증서획득, 법정산지, 지리표기 혹은 기타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성분 함유를 강조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한 경우 부합성 증명자료를 제출
5. 첨부해야할 기타증서 혹은 증명문서

- 검험검역기구는 라벨에 대하여 격식, 지면검사를 진행하고 라벨의 표기내용의 부합여부 검측을 진행. 부합여부 검측은 수출입정량포장식품의 일상검험감독업무와 결합하여 진행하며 단독으로 샘플을 채취하지 않음(7조)
- 처음으로 수입하는 정량포장식품의 중문라벨은 검사합격 후 검사를 시행한 검험검역기구에서 등록증빙을 발급(8조)

■ 라벨 불합격 상황 ■ (9조)

1. 수입정량포장식품이 중문라벨이 없는 경우
2. 수입정량포장식품 격식, 지면검사결과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표준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3. 부합여부검사결과 라벨표기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1회적으로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게 부합되지 않은 항목의 전부내용을 고지.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 불합격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에 폐기처분을 명하거나 반품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반품처리. 기타항목이 불합격인 경우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반품 혹은 폐기처리(10조)
- 처음으로 수입하여 라벨검사에서 합격한 정량포장식품은 재수입에서 라벨등록 증빙과 중국어, 외국어 라벨샘플만 제출(12조)

□ 감독관리

- 국가질검총국은 정보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사업무에 대하여 관리하며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에서 구체적으로 실시하며 검사 합격된 수입포장식품라벨에 대하여 등록(14조)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이 검사 불합격이나 기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재검사합격 전까지는 검험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 혹은 인가한 감독관리장소에 보관(15조)

- 각 지역 검험검역기구는 라벨검험감독관리업무에서 불합격 사례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질검총국에 보고(16조)

제2절 품목별 라벨 표기방법

가.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1(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 2012.04.20실시)

1. 범위

- 동 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정량포장식품라벨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하며 정량포장식품을 저장 운송하는 과정 중 보호하기 위한 식품저장 표기, 벌크 식품 및 즉석판매식품의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용어의 정의

- 2.1 정량포장식품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 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 2.2 식품라벨 : 식품포장상의 문자, 도형, 부호와 모든 설명물
- 2.3 성분 : 제조 혹은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상품에 존재(성질을 바꾼 형식존재도 포함)하는 그 어떤 물질, 식품첨가제도 포함
- 2.4 생산일자/제조일자 : 식품이 최종상품으로 되는 일자, 포장일자나 캔에 든 일자도 포함. 즉 식품 포장물 혹은 용기 중에 포장된 후 최종판매단위로 가는(완성) 날짜
- 2.5 품질보증기간 : 정량포장식품라벨에 표시한 저장조건하에 품질을 보존하는 기한. 기한 내 상품은 판매에 적합하며 라벨에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설명한 특수품질을 유지한다.

- 2.6 규격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포장식품이 들어가 있을 경우, 순함량과 내포된 개수에 관계에 대한 설명
- 2.7 주요전시면 : 소비자가 정량포장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면

3. 기본요구

- 3.1 정량포장식품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국가법률, 법규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관련 상품표준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3.2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하고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3.3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통속적이고 이해하고 쉽고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봉건미신, 선정성과 기타식품을 헐뜯거나 혹은 과학 영양 상식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않된다.
- 3.4 정량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여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3.5 정량포장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인 언어, 도형, 부호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모종의 성질이 다른 상품과 혼돈 되게 해서는 안 된다.
- 3.6 예방과 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된다. 비보건식품은 보건효과가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된다.
- 3.7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은 포장물(용기)과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 3.8 정량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등록된 상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3.8.1 병음 및 소수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 상응한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 3.8.2 동시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자와 상응관계가 있어야 한다.(수입식품의 제조자와 주소, 외국 판매대리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국외등록상표 제외)
- 3.9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표면 면적이 35cm²보다 클 때 강제표시 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가 1.8mm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 3.10 한 판매단위의 포장 안에 다른 종류, 날개로 판매할 수 있는 독립포장이 있을 경우, 날개포장식품마다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3.11 외포장물을 통해 뚜렷하게 내포장물 혹은 용기상의 모든 혹은 부분 강제표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포장물에 관련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 표시내용

- 4.1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량포장식품 라벨 내용
- 4.1.1 일반요구 : 식품명칭, 배합원료, 내용량, 규격, 제조상과(혹은)판매자,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저장조건, 식품위생허가증번호, 제품기준번호와 기타 필요한 표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4.1.2 식품명칭(食品名稱)
- 4.1.2.1 식품라벨의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4.1.2.1.1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의 한 개 혹은 몇 개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의 하나 혹은 등효(等效)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 4.1.2.1.2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4.1.2.2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리명칭” 혹은 “상표명칭”은 표시할 수 있지만 명칭의 옆에 5.1.1.1에서 규정한 임의의 한 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4.1.2.2. “새로 창조한 명칭”, “특이명칭”, “음역명칭”, “상호명칭”, “지역사투

리명칭” 혹은 “상표명칭”속에 사람들이 식품속성을 오해하는 문자 혹은 용어(단어)가 들어있을 때 표시한 명칭의 옆에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진실속성을 나타내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1.2.2.2 식품진실속성이 전용명칭이 문자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식품속성에 오해를 가지게 하였을 경우 동일한 문자크기로 식품 진실속성의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스음료’의 ‘주스’가 반드시 동일한 글자크기로 하여야 한다.

4.1.2.3 소비자들이 식품의 진실속성, 물리상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하여 식품명칭 앞 혹은 식품명칭 뒤에 상응하는 단어 혹은 구절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조한, 농축한, 복원한, 훈제한, 기름에 튀긴, 가루상태인, 알갱이 모양인” 등이 있다.

4.1.3 배합원료표(配料表)

4.1.3.1 정량포장식품의 라벨에 배합원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일성분 식품은 제외

4.1.3.1.1 배합원료표는 〈配料〉 혹은 〈配料表〉로 하여야 한다.

4.1.3.1.2 각종 배합원료는 제조 혹은 식품가공 때 투입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성분은 상술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

4.1.3.1.3 모종 배합원료가 2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 배합원료(복합식품첨가제 불포함)일 경우 배합원료표에 복합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뒤에 괄호로 투입량이 많은 순서대로 복합 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종의 복합배합원료가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투입량이 식품총량의 25%보다 적을 때 복합배합원료의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1.3.1.4 식품첨가제는 GB2760중 통용된 식품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통용명칭은 식품첨가제 상세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고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 및 식품첨가제 상세명칭 또는 국제코드(INS코드)를 동시에 표기할 수 있다.(표시방법 부록 B 참조). 통일된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부록 B중의 한가지 형식을 선택하여 식품첨가제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기능별명칭표시와 국제코드형식을 동시에 채택할 경우 국제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모종 식품첨가제 또는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 수요가 따를 때 상세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 식품첨가제의 명칭은 제작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식품 총량의 25%보다 적은 복합 배합원료 중 함유된 식품첨가제는 GB2760 첨가원칙의 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최종상품에서 공예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4.1.3.1.5 식품제조 혹은 가공과정에 투입되는 물은 반드시 배합원료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과정에서 휘발된 물 혹은 기타 휘발성 배합원료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3.1.6 식용할 수 있는 포장물도 배합원료표에 원시배합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식용할 수 있는 캡슐, 캔디, 찹쌀종이 등이다.

4.1.3.2. 아래의 식품배합원료는 표 1 표시대로 유형소속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표 1 성분리스트 표시방법 】

성분	유형소속명칭
각종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올리브유를 포함하지 않음	“식물유” 혹은 “정제식물유” 수소첨가 처리를 통하였으면 <수소첨가> 혹은 <부분 수소첨가>라고 하여야 한다.
각종 전분, 화학적 성질변화전분 불포함	“전분”
투입량이 2%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향신료 혹은 향신료 침전물 (단일 혹은 합한 것)	“향신료”, “향신료류” 혹은 “복합향신료”
츄잉껌의 각종 젤라틴 물질제제	“츄잉껌 기초제”, “껌 베이스”
첨가량이 10%를 초과하지 않은 각종 꿀에 절인과일	“꿀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임한 과일”
식용 에센스, 향료	“식용 에센스”, “식용 향료”, “식용 에센스 향료”

4.1.4 배합원료의 정량표시(配料的定量标示)

4.1.4.1 식품라벨 혹은 식품설명서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가치가 있고 특성이 있는 성분을 첨가하였다고 강조한 경우 강조한 성분의 첨가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1.4.2 식품라벨에 특별히 모종 혹은 여러가지 성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경우 강조하는 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4.1.4.3 식품명칭에 제기된 모종성분이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 모종 성분이 완제품에서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첨가량이 매우 적어 다만 향료로 사용하고 라벨에 특별히 강조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료의 완제품 중 함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4.1.5 내용량과 규격(净含量和规格)

4.1.5.1 내용량의 표시는 반드시 순함량, 숫자와 법정계량단위로 구성(부록 C 참조)

4.1.5.2 법정계량단위에 근거하여 아래 방식으로 포장물(용기)중의 식품의 순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a. 액체식품 :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b. 고체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 c. 반고체 혹은 점성(黏性)식품 : 질량사용 克 g, 千克 kg;
체적사용 升 L(l), 毫升 mL(ml)

4.1.5.3 내용량 계량단위는 표 2에 따라야 한다.

【 표 2 내용량 계량단위 표시방법 】

계량방식	내용량(Q) 범위	계량단위
체 적	Q < 1000mL Q ≥ 1000mL	毫升 (mL) (ml) 升 (L) (l)
질 량	Q < 1000 g Q ≥ 1000 g	克 (g) 千克 (kg)

4.1.5.4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는 표 3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표 3 내용량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내용량(Q) 범위	문자부호의 최소높이/ mm
5mL $Q \leq 50\text{mL}$ 5g $Q \leq 50\text{g}$	2
50mL $Q \leq 200\text{mL}$ 50g $Q \leq 200\text{g}$	3
200mL $Q \leq 1\text{L}$ 200g $Q \leq 1\text{kg}$	4
<math>q >="" 1\text{kg}<="" math=""> <math>q >="" 1\text{l}<="" math=""></math>q></math>q>	6

- 4.1.5.5 내용량은 식품명칭과 함께 포장물 혹은 용기와 동일한 전시면에 배열하여야 한다.
- 4.1.5.6 용기 중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인 식품 및 고체 물질이 주요 식품원료일 경우, 내용량 표시 외 질량 또는 질량분수의 형식으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표시형식 부록 C 참조)
- 4.1.5.7 동일한 정량포장에 여러개 독립된 정량포장식품이 있을 경우 내용량 표시 외 규격도 표시해야 한다.
- 4.1.5.8 규격의 표시는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과 개수로 조성, 또는 개수만 표시하되 “规格” 2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 정량포장식품의 규격인즉 내용량을 가리킨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 4.1.6 생산자, 판매자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生产者, 经销者的名称, 地址和联系方式)
- 4.1.6.1 법에 근거하여 등록하여 제품안전품질책임을 질수 있는 생산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아래 규정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 4.1.6.1.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지는 그룹, 그룹회사의 지사(자회사)는 반드시 각자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4.1.6.1.2 독립 법률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룹의 지사(자회사) 혹은 그룹의 생산기지는 그룹과 지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그룹의 명칭, 주소 및 산지만 표시하여도 된다. 산지는 행정 지역별

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한다.

4.1.6.1.3 위탁을 받고 정량포장식품을 가공할 경우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혹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 산지만 표시하여도 된다. 산지는 행정 지역별구분에 따라 지시급(地市级)지역까지 표시한다.

4.1.6.2 법률책임을 지는 생산자 또는 경소상의 연락처표기는 전화, 팩스, 온라인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또는 주소와 같이 표기하는 우편주소로 표기한다.

4.1.6.3 수입정량포장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혹은 지역명(홍콩, 마카오, 대만을 말함)을 표시하여야 하고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혹은 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4.1.7 일자표시(日期标示)

4.1.7.1 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일자 표시를 <포장의 어느 부위를 보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포장물의 구체적 부위를 표시해야 한다. 일자표시는 따로 붙이거나 추가 인쇄 또는 고쳐서는 안 된다.(표시형식 부록C 참조)

4.1.7.2 동일 정량포장에 다양한 생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이 표시된 독립 정량포장식품이 들어있을 경우 외포장에 표시되는 품질보증기한은 유효기간이 제일 짧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품질보증기한으로 표시한다. 외포장에 표시되는 생산일자는 최초 생산한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를 표시하거나 외포장 완성일자 혹은 독립정량포장식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을 각각 표시해도 된다.

4.1.7.3 년, 월, 일의 순서대로 일자를 표시해야 하며 이 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날짜표시순서에 대한 설명을 달아야 한다. (표시형식 부록 C 참조)

4.1.8 저장조건(贮存条件)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부록 C 참조)

4.1.9 식품생산허가증번호(食品生产许可证编号)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1.10 제품표준번호(产品标准代码)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정량포장식품(수입은 불포함)은 반드시 집행표준코드와 순서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4.1.11 기타 표시내용

4.1.11.1 조사(방사선)식품(辐照食品)

4.1.11.1.1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식품은 식품명칭 근처에 “辐照食品”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4.1.11.1.2 이온화 방사선 또는 이온화 에너지 처리 배합원료는 배합원료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4.1.11.2 유전자변형식품(转基因食品)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1.11.3 영양라벨(营养标签)

4.1.11.3.1 특수 식사류 식품과 영유아 전문공급 주·부식류 식품은 주요 영양성분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되 표시방식은 GB13432를 근거로 집행한다.

4.1.11.3.2 기타 예포장식품에 영양표시를 수요로 할 경우 표시방법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1.11.4 질량(품질)등급(质量(品质)等级)

집행하는 제품표준이 질량(품질)등급을 명확히 규정한 식품은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의 라벨표시방법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정량포장식품라벨은 응당 4.1항의 상응한 요구에 따라 식품명칭, 규격, 내용량, 생산일자, 보존기간과 보존방법이 표시되어야 하고 기타 내용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설명서 또는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4.3 표시내용의 면제

4.3.1 아래 정량포장식품은 품질보증기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에틸알코올 함량이 10% 또는 10%이상인 음료주, 식초, 식용염, 고체 설탕류, 미원

4.3.2 정량포장식품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최대 표면면적이 10cm²보다 작을 경우 (최대표면면적계산방법 부록A 참조) 제품명, 내용량, 생산자(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주소만 표시해도 된다.

4.4 추천 표시 내용

4.4.1 로트번호

제품의 수요에 근거하여 제품 로트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4.4.2 식용방법

제품수요에 근거하여 용기 개봉방법, 식용방법, 조리방법, 재제조방법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표시할 수 있다.

4.4.3 알레르기 유발물질

4.4.3.1 아래 식품 및 그 제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일 배합원료로 사용되었을 때 배합원료표에 쉽게 판별이 가능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합원료표 근처에 제시를 달아야 한다.

- a.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및 그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또는 그들의 교잡품종류)
- b. 갑각류 동물 및 그 제품(새우, 랍스타, 게 등)
- c. 어류 및 그 제품
- d. 알(蛋)류 및 그 제품
- e. 땅콩 및 그 제품
- f. 대두 및 그 제품
- g.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
- h. 견과류 및 씨(果仁)류 제품

5. 기타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 심사와 비준이 필요한 식품은 그 라벨 표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부록 A) :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최대 표면면적 계산방법

A.1 장방체형 포장물 또는 장방체형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장방체형포장물 또는 장방체포장용기의 최대 한 개 측면의 높이(cm)곱하기 넓이(cm)

A.2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용기 또는 원추형 포장물, 원추형 포장물 용기에 근접한 포장물의 계산방법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높이(cm)곱하기 원 둘레 길이(cm)의 40%

A.3 기타 모양의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의 계산방법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 총 표면적의 40%

만약 포장물 또는 포장용기에 명확한 주요 전시 면이 있을 경우 주요전시면의 면적을 최대표면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포대 등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변두리밀봉면적을 감해야 한다. 병 또는 캔의 표면면적을 계산할 때 어깨부분, 목 부분, 정상부분과 아랫부분의 볼록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록 B) : 배합원료 중 식품첨가제의 표시방법

B.1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 버터, 인지질, 지방산카스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향), 포도당 시럽, 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2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 명칭 및 국제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3 첨가량의 감소 순에 따라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 식품첨가제항 통일표시 형식건립

B.4.1 일반원칙

직접 사용하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반드시 표시, 영양강화제, 식용에센스향료, 유잉겔기초제(胶基糖果中基础剂)물질은 배합원료표의 식품첨가제항 외에 표시할 수 있다. 직접 사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는 식품첨가제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배합원료표 중 식품첨가제항의 표시순서는 사용된 각종 식품첨가제의 총중량에 따라 결정된다.

B.4.2 식품첨가제의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카라기난, 구아검, 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3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국가코드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322, 476), 식용에센스, 착색제(102)),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477), 증점제(407, 412), 착색제(160b)),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B.4.4 식품첨가제의 기능별명칭 및 상세명칭 전부 표시

배합원료 : 물, 전지분유, 크림, 식물유, 초콜릿(코코아엑상덩어리, 설탕, 코코아버터, 유화제(인지질, 지방산카르토르에스테르(PGPR)), 식용에센스, 착색제(레몬황)), 포도당시럽, 식품첨가제(유화제(프로필렌글리콜지방산에스테르), 증점제(카라기난, 구아검), 착색제(아나토)), 맥아텍스트린, 식용향료

부록 C) : 부분 품목 라벨링에 대한 추천 표시양식

C.1 요약

본 부록은 부분 정량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추천 양식 예시를 통해 매칭된 항목을 표기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양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식품의 특성이나 포장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정을 통해 사용 시 반드시 추천 양식의 기본 함의와 일치해야 한다.

C.2 내용량과 규격 표시

내용량을 표시 할 때 계량단위는 통일적으로 g을 사용하며 구분 기호로는 콜론을 사용한다. 라벨링 시 실제 상품의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하고 빈칸 혹은 기타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C.2.1 단일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5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25g(200g+25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25증정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25)g

C.2.2 내용량과 고형물의 표시(ex: “통조림배시럽”)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25g 沥干物(혹은 固形物 혹은 배 토막): $\geq 250g$
(혹은 $\geq 60\%$)

C.2.3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동질 정량포장식품 포함 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40g \times 5;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5 \times 4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5 \times 40g);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40g \times 5);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5가지);
净含量: 200g 规格: 5×40g;
净含量: 200g 规格: 40g×5;
净含量: 200g 规格: 5가지;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100g+5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80g×2+40g);
净含量: 200g 规格: 100g+50g×2;
净含量: 200g 规格: 80g×2+40g;

C.2.4 동일 정량포장 내 다양한 이질 정량포장식품 포함시, 내용량과 규격의 표시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A상품 40g×3, B상품 4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200g(40g×3, 40g×2);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100g A상품, 50g×2 B상품, 50g C상품;
净含量(혹은 净含量/规格):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净含量/规格: 100g(A상품), 50g×2(B상품), 50g(C상품);
净含量/规格: A상품 100g, B상품 50g×2, C상품 50g;

C.3 일자 표시

일자 중 년, 월, 일은 빈칸, 사선, 하이픈, 기간 등 부호로 분리하거나 구분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년은 보통 4자리 수로 표시하며 작은 포장 식품의 경우 2자리 수로 표시하고 월, 일은 2자리 수로 표시한다.

일자의 표시형식

2010年 3月 20日:

2010 03 20; 2010/03/20; 20100320; 20일3월2010년; 3월20일2010년;

(月/日/年): 03202010; 03/20/2010; 03202010;

C.4 품질보증기한 표시

품질보증기한의 표시형식

....전 까지 식용 권장 함; (最好在....之前食(饮)用)

....전 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之前食(饮)用最佳)

...전까지 제일 좋다; (...之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제일 좋다....; (此日期前最佳....)

해당 날짜까지 식용이 제일 좋다...; (此日期前食(饮)用最佳....)

유통기한은까지 입니다; (保质期至....)

유통기한 **개월(保质期....个月)(혹은 *日, 혹은 *天, 혹은 *周, 혹은 *年)

C.5 보관조건 표시

보관조건 표시 시 “贮存条件”, “贮藏条件”, “贮藏方法” 등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보관조건의 표시 형식

상온(혹은 냉동, 냉장, 어두운 곳, 서늘하고 건조한 곳) 보관:

(常温(혹은 冷冻, 冷藏, 避光, 阴凉干燥处)保存)

-°C 보관; (**-**°C 保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请置于阴凉干燥处)

상온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냉장 보관 하십시오; (常温保存, 开封后冷藏)

온도: << **°C, 습도: << **°C (温度: << **°C, 湿度: << **°C)

나.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GB28050-2011(위생부, 2013.01.01실시)

1. 범위 : 본 표준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에 제시하는 영양정보의 묘사와 설명에 적용된다. 본 표준 보건식품 및 정량포장식품특수음식용식품(预包装特殊膳食用食品)의 영양라벨표기에 적용하지 않다.

2. 용어와 정의

- 2.1 영양라벨 : 정량포장식품라벨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와 특성의 설명이며 영양성분표, 영양성명 및 영양성분기능성명을 포함한다. 영양라벨은 정량포장식품라벨의 일부분이다.
- 2.2 영양소 : 식품 중에 특정한 생리역할을 갖추어 기체생장, 발육, 활동, 번식 및 정상적 다사를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말하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광물질 및 비타민을 포함한다.
- 2.3 영양성분 : 식품중의 영양소 및 영양소 이외의 영양과(혹은) 생리기능을 갖추는 기타 식물성분을 가리킨다. 각 영양성분의 정의는 GB/Z21922 <식품 영양성분기본용어>에서 참조할 수 있다.
- 2.4 핵심영양소 : 영양라벨 중의 핵심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포함함
- 2.5 영양성분표 : 식품영양성분명칭, 함량 및 그 영양소참고시치에 차지한 백분비를 표기하는 규범한 표
- 2.6 영양소기준치(NRV) : 식품영양라벨만 적용하여 식품영양성분 함량의 참고치를 비교하는 데에 적용됨
- 2.7 영양성명 : 식품영양특성에 대한 묘사와 성명, 예를 들어 열량 수준, 단백질 함량 수준. 영양성명은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을 포함한다.
- 2.7.1 함량성명 : 식품 중 열량 혹은 영양성분 함량수준에 관한 성명. 성명용어는 '높' '낮' 혹은 '없음' 등 포함한다.
- 2.7.2 비교성명 : 소비자가 알고 있는 같은 종류 인 식품의 영양성분함량 혹은 열량을 비교한 후의 성명. 성명용어는 '증가' 혹은 '감소'등을 포함한다.
- 2.8 영양성분기능성명 : 한 영양성분이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 및 정상생리기능 등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의 성명

- 2.9 반올림 간격 : 반올림 수치 최소한 수치의 단위
- 2.10 식용 가능 부분 : 정량포장식품의 내용량은 식용 불가부분을 제거하여 남은 부분

3. 기본요구

- 3.1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 표기하는 모든 영양정보가 진실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표기하는 것과 식품의 영양역할 및 기타 역할을 과대하면 안 된다.
- 3.2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은 증문을 사용해야 한다. 정량포장식품 라벨은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크기는 해당 중국어보다 작아야 한다.
- 3.3 영양성분표는 ‘블록다이어그램’형식으로 표시하여 하며 블록 사이즈 제한 없음, 포장의 기선과 수직해야 한다. 표의 제목은 ‘영양성분표’이어야 함
- 3.4 식품영양성분함량은 구체적 수치로 표기해야 하며 수치는 원료계산 혹은 제품 점검으로 취득할 수 있음. 각 영양성분의 영양소기준치(NRV)는 부록A 참조
- 3.5 영양라벨의 양식이 부록B 참조, 식품업체가 식품의 영양특성, 포장면적의 크기와 모양 등 요소에 따라 그 중의 한 가지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 3.6 영양라벨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 포장단위에 표기해야 한다.

4. 강제표기내용

- 4.1 모든 정량포장식품의 영양라벨이 강제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은 열량, 핵심영양소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를 포함한다. 기타 성분을 표기할 때 적당한 형식을 취하여 열량과 핵심영양소의 표기를 더 눈에 띄이게 해야 한다.
- 4.2 열량과 핵심영양소 이외에 기타 영양성분에 대하여 영양성명 혹은 영양성분기능 성명을 할 때 영양성분표에서 해당되는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4.3 영양강화제를 사용한 예포장식품은 4.1 제시한 내용 이외에 영양성분표 중에 강화한 후 식품 중 해당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그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도 표기해야 함
- 4.4 식품배합재료가 수소화와 (혹은) 부분 수소화유지를 함유할 경우,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산)의 함량도 표기해야 함
- 4.5 상술 규정하지 않는 영양소기준치(NRV)의 영양성분은 함량만 표기하면 됨

5. 선택표기내용

- 5.1 강제표기내용을 제외하고 영양성분표 중에 표1 제시한 기타 성분도 선택 표기할 수 있음
- 5.2 한 영양성분 함량 표기수치 표C.1의 함량요구와 제한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함량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성명방식이 표C.1 참조. 한 영양성분 함량은 표C.3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된 성분이 비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성명방식은 표C.3 참조. 한 영양성분은 동시에 함량성명 및 비교성명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두 가지 성명방식을 동시 사용할 수 있거나 함량성명만 사용해도 됩니다. 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동의어는 표C.2와 표C.4참조
- 5.3 한 영양성분의 함량 표기수치 함량성명 혹은 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에 부합할 경우, 부록D 제시하는 상응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양성분기능성명 기준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기능성명용어에 대하여 어떤 형식의 수정, 첨가 및 합병을 하면 안 된다.

6. 영양성분의 표기방식

- 6.1 정량포장식품 중 열량과 영양성분의 함량은 매100그램(g)과(혹은) 매100밀리리터(mL)과(혹은) 한 몫의 식품가능부분 중의 구체적인 수치로 표기해야한다. 한 몫으로 표기할 때 식품의 양을 표기해야 함. 한 몫의 크기 식품의 특점 혹은 추천물량에 의거하여 규정함

6.2 영양성분표 중 강제표기 및 선택 가능 표기의 영양성분의 명칭, 순서, 표기단위, 반올림 간격, '0' 경계치 등 표1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한 영양성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순서대로 위로 이동함.

6.3 표1를 제외하고 GB14880과 고생부 공고 중 강화를 허락된 기타 영양성분을 표기할 때 표 1에 나열한 영양소 뒤에 표기해야 한다.

표 1 열량, 영양성분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및 '0' 경계치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 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열량	킬로줄(kJ)	1	≤17kJ
단백질	그램(g)	0.1	≤0.5g
지방	그램(g)	0.1	≤0.5g
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트랜스지방(산)	그램(g)	0.1	≤0.3g
단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다불포화지방(산)	그램(g)	0.1	≤0.1g
콜레스테롤	밀리그램(mg)	1	≤5mg
탄수화물	그램(g)	0.1	≤0.5g
설탕(유당)	그램(g)	0.1	≤0.5g
식이섬유(혹은 단체성분,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그램(g)	0.1	≤0.5g
나트륨	밀리그램(mg)	1	≤5mg
비타민A	(μ gRE)	1	≤8 μ gRE
비타민D	마이크로그램(μ g)	0.1	≤0.1 μ g
비타민E	(mg α -TE)	0.01	≤0.28mg α -TE
비타민K	마이크로그램(μ g)	0.1	≤1.6
비타민B1(티아민)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2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6	밀리그램(mg)	0.01	≤0.03mg
비타민B12	마이크로그램(μ g)	0.01	≤0.05 μ g
비타민C(아스코르브산)	밀리그램(mg)	0.1	≤2.0mg
니코틴산	밀리그램(mg)	0.01	≤0.28mg
엽산	(μ g) 혹은 (μ g DFE)	1	≤8 μ g
판토텐산	밀리그램(mg)	0.01	≤0.10mg
비오틴	마이크로그램(μ g)	0.1	≤0.6 μ g
콜린	밀리그램(mg)	0.1	≤9mg
인	밀리그램(mg)	1	≤14mg

열량, 영양성분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간격	'0' 경계치(매100g 혹은 100ml)
칼륨	밀리그램(mg)	1	≤20mg
마그네슘	밀리그램(mg)	1	≤6mg
칼슘	밀리그램(mg)	1	≤8mg
철	밀리그램(mg)	0.1	≤0.3mg
아연	밀리그램(mg)	0.01	≤0.30mg
요오드	마이크로그램(μ g)	0.1	≤3.0 μ g
셀레늄	마이크로그램(μ g)	0.1	≤1.0 μ g
구리	밀리그램(mg)	0.01	≤0.03mg
불소	밀리그램(mg)	0.01	≤0.02mg
망가니즈	밀리그램(mg)	0.01	≤0.06mg

- a. 영양성분의 표기단위가 표 중의 중문 혹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거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음
- b. 한 영양성분 함량수치 ≤ '0' 경계치, 함량은 '0'로 표기해야 함. '뿔'으로 계량단위를 할 사용할 때 매 100mg 혹은 100ml의 '0' 경계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c. 유 및 유제품의 영양라벨은 직접 유당을 표기할 수 있음

6.4 제품 유통기한 안에 열량과 영양성분함량 허용오차범위는 표 2 제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표 2 열량 및 영양성분함량의 허용 오차범위 】

열량과 영양성분	허용오차범위
식품의 단백질, 다불포화지방(산), 탄수화물, 설탕(유당만),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및 그 단체, 비타민(비타민D, 비타민A 제외), 광물질(나트륨 제외), 강화한 기타 영양성분	≥80% 표기치
식품 중 열량 및 지방, 포화지방(산), 반식지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유당 제외)	≤120% 표기치
식품 중 비타민A와 비타민D	80%~180% 표기치

7.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

- 생선식품, 날고기, 물고기, 야채, 과일, 난류
- 알코올함량≥0.5%의 음료 주류
- 포장 총면적≤100cm² 혹은 최대 표면면적≤20cm²의 식품
- 즉시 제작하여 판매하는 식품
- 포장하는 음용수

- 매일식용량 ≤ 10g 혹은 10ml의 예포장식품
- 기타법률법규표준에 규정하는 영양라벨을 안 표기해도 되는 정량포장식품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정량포장식품이 포장에 어떠한 영양정보를 나타낼
경우, 본 표준을 참조하여 이행해야 한다.

부록 A) : 식품라벨영양소기준치(NRV) 및 그 사용방법

A.1 식품라벨영양기준치(NRV)

영양성분	NRV	영양성분	NRV
열량 ^a	8400kJ	엽산	400 μ g DFE
단백질	60g	판토텐산	5mg
지방	≤60g	비오틴	30 μ g
포화지방산	≤20g	콜린	450mg
콜레스테롤	≤300mg	칼슘	800mg
탄수화물	300g	인	700mg
식이섬유	25g	칼륨	2000mg
비타민A	800 μ gRE	나트륨	2000mg
비타민D	5 μ g	마그네슘	300mg
비타민E	14mg α -TE	철	15mg
비타민K	80 μ g	아연	15mg
비타민B1	1.4mg	요오드	150 μ g
비타민B2	1.4mg	셀레늄	50 μ g
비타민B6	1.4mg	구리	1.5mg
비타민B12	2.4 μ g	불소	1mg
비타민C	100mg	망가니즈	3mg
니코틴산	14mg		

a 열량은 2000kcal와 대등.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제공하는 열량은 각각 총열량의 13%, 27%, 60%

A.2 사용목적 및 방식

열량 혹은 영양성분의 함량을 비교하는 것과 묘사에 적용됨. 영양성명과 수치 표기할 때 기준치로 삼는다.

사용방식이 영양성분 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지한 백분비. 지정한 NRV%의 반올림 간격은 1다, 예를 들어 1%, 5%, 16% 등

A.3 계산

영양성분함량이 영양소기준치(NRV)에 차진한 백분비 계산공식(A.1):

$$NRV\% = X/NRV \times 100\%$$

X=식품중 모 영양소의 함량

NRV=해당된 영양소의 영양소기준치

부록 B) : 영양라벨형식

B.1 본 부록이 예포장식품 영양라벨의 형식을 규정한다.

B.2 아래 6가지 형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영양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B.2.1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열량과 핵심영양소만 표기하는 형식 예1 참조

예1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B.2.2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더 많은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형식 예2 참조

예2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饱和脂肪 (포화지방)	克(g)	
胆固醇 (콜레스테롤)	毫克(m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糖 (설탕)	克(g)	
膳食纤维 (식이섬유)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维生素A (비타민A)	微克视黄醇当量(μ gRE)	%
钙 (칼슘)	毫克(mg)	%

주의: 적당한 형식을 사용하여 핵심영양소를 더 뜨이게 해야 함

B.2.3 외국어 표기하는 형식

외국어를 표기하는 영양라벨 예3 참조

예3

■ 营养成分表/nutrition information ■

项目 Items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per 100g/100ml or per serving	营养素参考值% NRV%
能量 energy	千焦(kJ)	%
蛋白质 protein	克(g)	%
脂肪 fat	克(g)	%
碳水化合物 carbohydrate	克(g)	%
钠 sodium	毫克(mg)	%

B.2.4 가로형식

가로형식

가로형식 영양라벨 예4 참조

예4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脂肪 (지방)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	-	%

주의 :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나열하여 2칸 혹은 이상 표기한다.

B.2.5 문자 형식

포장의 총면적이 100cm²보다 작을 때 영양성분을 표기하는 경우, 표 아니 다른 형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양기준치(NRV) 생략해도 된다. 포장특성에 따라 영양성분 좌에서 우까지 혹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해도 된다. 예5 참조

예5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100g, 能量(열량)××kJ, 蛋白质(단백질)××g, 碳水化合物(탄수화물)××g, 钠(나트륨)××mg.

B.2.6 영양설명과 영양성분기능설명을 표기하는 영양라벨 예6참조

예6

■ 营养成分表(영양성분표) ■

项目	每100克(g) 혹은 100毫升(ml) 혹은 每份	营养素参考值% 혹은 NRV%
能量 (열량)	千焦(kJ)	%
蛋白质 (단백질)	克(g)	%
脂肪 (지방)	克(g)	%
碳水化合物 (탄수화물)	克(g)	%
钠 (나트륨)	毫克(mg)	%

영양설명: 저지방××

영양성분기능설명: 매일 음식 중 지방이 제공하는 열량 비례는 총열량의 30% 초과하면 적당하지 않다.

영양설명, 영양성분기능설명이 라벨의 임의 위치에 표기해도 됨. 글자크기는 식품 명칭과 상표보다 크면 안 됨

부록 C) : 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과 비교성명의 요구, 여건과 동의어

- C.1 표C.1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 C.2 표C.2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 C.3 표C.3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 C.4 표C.4 정량포장식품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동의어

▣ 표C.1 영양성분함량성명의 요구와 여건 ▣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열량	무열량	≤17kJ/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지방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0%
	저열량	≤170kJ/100g 고체 ≤80kJ/100ml 액체	
단백질	저단백질	단백질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5%	
	저단백질 내원, 혹은 단백질 함유	매 100g 함량≥10% NRV 매 100ml 함량≥5%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5% NRV	
	단백질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 함량≥20% NRV 매 100ml 함량≥10% NRV 혹은 매 420kJ 함량함량≥10NRV	
지방	무지방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저지방	≤0.3g/100g 고체; ≤1.5g/100ml 액체	
	비계가 적다	지방함량≤10%	축육과 가금만 제한
	탈지	액체 우유와 요구르트: 지방함량 ≤0.5%; 분유: 지방함량≤1.5%	유제품만 제한
	불포화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0.1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저포화지방	≤1.5g/100g 고체 ≤0.75g/100ml 액체	1.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총화만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생긴 열량≤총열량의 10%
	트랜스지방이 없음 혹은 불포함	≤0.3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구분	함량성명방식	함량요구	제한여건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없음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동시에 저포화지방과 지방의 성명함량 요구 및 제한여건에 부합하여야 함
	저 콜레스테롤	≤20mg/100g 고체 ≤10mg/100ml 액체	
탄수화물 (설탕)	설탕이 없음 혹은 불포함	≤0.5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유제품만 제한
	저당	≤5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저유당	유당함량≤2g/100g(ml)	
식이섬유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혹은 내원이 좋다.	유당함량≤0.5g/100g(ml)	식이섬유 총량이 함량요구에 부합함; 혹은 수용성 식이섬유, 비수용성 식이섬유 혹은 단체성분 중 임의의 하나에 함량요구에 부합함.
	식이섬유 내원 혹은 식이 섬유를 함유함	≥3g/100g(고체) ≥1.5g/100ml(액체) 혹은 ≥1.5g/420kJ	
나트륨	나트륨이 없음 혹은 불포함	≤5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성명의 성명에 부합한 경우 '염'자로 '납'자를 대체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염', '염분 줄임'
	나트륨 함량이 아주 낮다.	≤40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나트륨 함량이 적다.	≤120mg/100g(고체) 혹은 100ml(액체)	
비타민	비타민×내원 혹은 비타민 함유×	매 100g≥15% NRV 매 100ml≥7.5% NRV 혹은 매 420kJ≥5%NRV	'다양한 비타민'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타민 함량이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30% NRV 매 100ml≥15% NRV 혹은 매 420kJ≥10%NRV	'다양한 비타민'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비타민 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물질(나트륨 불포함)	×내원, 혹은 ×함유	매 100g≥15% NRV 매 100ml≥7.5% NRV 혹은 매 420kJ≥5%NRV	'다양한 광물질'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높다. 혹은 ×풍부하다	매 100g≥30% NRV 매 100ml≥15% NRV 혹은 매 420kJ≥10%NRV	'다양한 광물질' 대량으로 함유하는 것은 3가지 및(혹은) 3가지 이상의 광물질 함량이 '함유'의 성명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뿔'으로 식품계량단위로 삼을 때 100g(ml)의 함량요구에 부합하여만 성명할 수 있음.

표C.2 영양성분함량성명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불포함, 무	영 '0', 없음, 100% 불포함, 무, 0%	함유, 내원	제공, 함유, 있음
아주 낮다.	아주 적다.	대량으로 함유, 높다.	내원이 좋다. ×× 풍부하다. 풍부한 ××, 높은×× 제공함.
낮음	적음, 지방이 적다*.		

* '지방이 적다.' 저지방설명에만 적용됨

표C.3 열량과 영양성분비교성명의 요구와 여건

비교성명의 방식	요구	여건
열량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열량이 25% 이상 감소함	참고식품(기준식품)이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종류 혹은 같은 속성의 식품이어야 함
단백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단백질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지방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지방이 25% 이상 감소함	
콜레스테롤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콜레스테롤이 25% 이상 감소함	
탄수화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탄수화물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설탕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설탕이 25% 이상 감소함	
식이섬유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식이섬유가 2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함	
나트륨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이 25% 이상 감소함	
광물질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광물질이 25% 이상 감소함	
비타민 증가 혹은 감소	참고식품과 비교하여, 비타민이 25% 이상 감소함	

표C.4 비교성명의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표준어	동의어
증가	증가 ×% (×배)	감소	감소×% (×배)
	증 ×% (×배)		감 ×% (×배)
	가 ×% (×배)		소 ×% (×배)
	제고×% (×배)		줄임 ×% (×배)
	첨가×% (×배)		하락 ×% (×배)
	증가×%, 제고(×배)		하락 ×% (×배) 등

다.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 GB13432-2004(국가질검총국, 2005.10.01실시)

□ 특수식용식품(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의 정의

- 부분 특수소비자들의 생리수요 혹은 부분 질환환자의 영양수요에 따라 특수 배합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으로 성분함량이 일반식품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

□ 기본요구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이하 내용 표기금지
 - 질병 예방, 완화, 치료 혹은 치유작용
 - 회춘, 검은머리재생, 치아갱생, 항암, 암 치료 혹은 유사용어
 - 식품명칭에 약물명칭 혹은 약물도안 추가, 피로, 보건기능을 암시하는 명칭

□ 강제표기내용

- 식품명칭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특수식용식품 정의에 부합되는 식품명칭에만 영아조제분유, 무당두유(당뇨병 환자용), 철강화고단백두유(빈혈환자용) 등 특수의미가 있는 수식어 사용 가능
- 배합원료 리스트 및 배합원료정량표기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의 실제 영양소로 표기, 영양강화제 첨가시 강화영양제함량 표기
- 내용량 및 고형물함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제조사, 경소상 명칭 및 주소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 일자표기 및 저장설명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한 표기
 - 품질보증기한 혹은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특수저장조건 표기
 - 개봉 후 저장이 적당하지 않거나 원 포장내 저장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시
- 식용방법 및 적합군체
 - 식용방법, 매일 혹은 매찬 식용량 표기
 - 식용에 적합한 소비자 군체 표기
- 제품표준번호 & 품질등급 & 기타강표기내용 & 강제표기내용의 면제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 규정에 따라 표기

표기 허용내용

- 칼로리, 영양소 함량 수준 성명
- 칼로리, 영양소 함량 비교 성명
- 영양소 작용 성명

추천 표기내용

- 영양성분 표기에 <중국주민식사영양소참고섭취량>중 추천 섭취량과 비교분석표기
 - ※ 자료 : http://www.sac.gov.cn/SACSearch/outlinetemple/gjcxjg_qwyd.jsp?bzNum=GB13432-2004

라.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 GB10344-2005(국가질검총국, 2006.10.01실시)

음료주(alcoholic beverage) 정의

- 알코올 도수가 0.5%vol 이상 알코올음료로 발효주, 증류주와 배합주 포함

기본요구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강제표기내용

- 명칭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배합원료리스트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알코올도수
 - 酒精度로 알코올도수 표기
- 맥아즙, 과즙함량
 - 맥주는 맥아즙 농도(°P 혹은 °) 표기
 - 과실주(포도주 제외)는 과즙함량 % 표기
- 제조사, 경소상 명칭 및 주소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일자 및 저장설명
 - 포장일자와 품질보증기한 년, 월, 일 순으로 표기
 - 품질보증기한 혹은 유통기한이 저장조건과 관련되는 경우 저장조건 표기
- 내용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일반 毫升 혹은 mL(ml), 升 혹은 L, l로 표기, 대용량 황주는 千克 혹은 kg 표기가 가능



- 제품표준 & 품질등급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부합
- 경고문구
 - 유리병 포장 맥주는 GB4927-2001 규정에 부합
- 생사허가증
 -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주류는 생산허가증표기와 번호 표기
- 강제표기내용의 면제
 - 포도주와 알코올도수 10%vol 이상 기타 음료주는 품질보증기한 면제

비 강제 표기내용

- 생산로트번호
- 음용방법
- 칼로리 및 영양소
- 제품유형

※ 자료 : http://www.sac.gov.cn/SACSearch/outlinetemplate/gjcxjg_qwyd.jsp?bzNum=GB10344-2005

제3절 라벨링

1. 막걸리 등록사례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배합원료, 제품유형, 알코올도수, 원산국, 저장조건, 생산업체, 포장일자, 품질보증기한, 수입사&주소&연락처, 내용량

2. 커피음료 등록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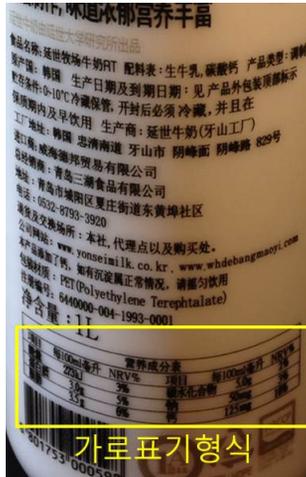


중문 표기내용 : 제품명칭, 제품유형, 배합원료표, 내용량, 원산국, 제조사, 수입사&주소&전화,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저장방법, 영양성분

3. 고추장 & 탄산음료 등록사례

<p>2012.09.17 중국_비빔고추장 450 g</p> <p>103*61</p>  <p>92*48</p>  <p>90*49</p> 	<p>○ 증문 표기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칭 - 상표 - 무색소, 방부제표기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주소 - 수입상&주소&전화 - 주의사항 - 식용방법 - 영양성분 		<p>○ 증문 표기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칭 - 제품류형 - 내용량 - 수입표기 - 배합원료 - 원산국 - 생산일자 - 품질보증기한 - 생산업체 - 수입상&주소&전화 - 영양성분
--	---	---	--

4. 영양성분 표시 사례

 <p>食品名称: 韩今大酱 (豆酱) 净含量: 500g · 原产国: 韩国</p> <p>配料: 大豆, 小麦粉, 食盐, 小麦, 水, 豆酱, 面粉, 山梨酸钾</p> <p>生产日期: (年,月,日) 2013.10.07</p> <p>保质期: 12个月 · 贮藏方法: 存放于阴凉干燥处, 开封后请冷藏保存. · 生产商: 韩国每日食品(株)</p> <p>总代理商: 上海韩今贸易有限公司 地址: 上海市普陀区新村路 423弄 绿地普陀商务广场23号504室</p> <p>电话: 021-5095-1111</p> <p>注意: 产品内含保鲜剂和防腐剂, 不可食用. 放置越久会有颜色变深或自然熟成现象, 请放心食用.</p>	 <p>丹特牌蜂蜜柚子茶 净含量: 300g</p> <p>配料: 蜂蜜柚子(柚子(韩国产)30%, 白砂糖50%, 165%, 白砂糖27%, 纯净水3.8%, 蜂蜜(韩国产)2.5%, 柠檬酸, 维生素C</p> <p>食用方法: 用冷水或温水(50-60℃)加入柚子茶 20g-30g充分搅拌均匀即可享用.</p> <p>贮存条件: 避免阳光直射, 开封后需冷藏</p> <p>生产日期: 2014年 2月</p> <p>保质期: 12个月</p> <p>产地: 韩国</p> <p>生产商: 韩国丹特食品株式会社</p> <p>地址: 韩国京畿道川南新北面清新路2099号83-8</p> <p>中国总代理商: 上海丹特食品有限公司 地址: 浦东新区川沙新镇大港30号南年大厦1216室 电话: 024-23836379/021-58409327/010-84467137</p>																		
 <p>Nutrition Facts Valeur Nutritive</p> <p>Serving Size 1 pack(190 ml) Serving Per Container 1</p> <p>Portion 1 carton: 190 ml Portion par contenant: 1</p> <p>Amount Per Serving Teneur par portion</p> <p>Calories / Calories 120 Calories from fat / Calories des lipides 25</p> <p>% Daily Value* / % Valeur quotidienne</p> <p>Total Fat / Lipides 3 g 5% Saturated / Saturés 2 g 10% *Trans / trans 0 g</p> <p>Cholesterol / Cholestérol 9 mg 3% Sodium / Sodium 70 mg 3% Carbohydrate / Glucides 20 g 7% Dietary Fiber / Fibres alimentaires 0 mg 0% Sugars / Sucres 15 g</p> <p>Protein / Protéines 4 g</p> <p>Calcium / Calcium 10% Iron / Fer 0%</p> <p>*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diet of 2,000 calories diet. *Pourcentage de la valeur quotidienne selon un régime alimentaire de 2,000 calories.</p> <p>*Contient des ingrédients de Lactose *Protéines végétales *Ne pas réchauffer *Ne pas ouvrir *Whitened Flavored Milk, Glucose A Parfumé Lait</p> <p>영문표기형식</p>	 <p>延世牧场牛奶</p> <p>食品名称: 延世牧场牛奶RT 配料表: 生牛乳, 碳酸钙 产品类型: 调制乳</p> <p>原产国: 韩国 生产日期及到期日期: 见产品外包装顶部标示</p> <p>贮存条件: 0-10℃冷藏保存, 开封后必须冷藏, 并且在保质期内及早饮用 生产商: 延世牛奶(牙山工厂)</p> <p>工厂地址: 韩国 忠清南道 牙山市 阴峰面 阴峰路 829号</p> <p>总经销商: 青岛德邦贸易有限公司 地址: 青岛市城阳区夏庄街道东黄埠社区 电话: 0532-8793-3920</p> <p>销售及交换场所: 本社, 代理点以及购买处.</p> <p>本产品网址: www.yonseimilk.co.kr, www.whdebangmaoyi.com</p> <p>本产品例子: 青岛德邦贸易有限公司 经销商: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p> <p>注册号码: 6449000-004-1993-0001</p> <p>净含量: 1L</p> <p>营养成分表</p> <table border="1"> <tr> <th>项目</th> <th>每100ml</th> <th>NRV%</th> </tr> <tr> <td>能量</td> <td>200J</td> <td>4%</td> </tr> <tr> <td>蛋白质</td> <td>3g</td> <td>6%</td> </tr> <tr> <td>脂肪</td> <td>3.5g</td> <td>7%</td> </tr> <tr> <td>碳水化合物</td> <td>5g</td> <td>10%</td> </tr> <tr> <td>糖</td> <td>12g</td> <td>24%</td> </tr> </table> <p>가로표기형식</p>	项目	每100ml	NRV%	能量	200J	4%	蛋白质	3g	6%	脂肪	3.5g	7%	碳水化合物	5g	10%	糖	12g	24%
项目	每100ml	NRV%																	
能量	200J	4%																	
蛋白质	3g	6%																	
脂肪	3.5g	7%																	
碳水化合物	5g	10%																	
糖	12g	24%																	

제4절 자료 출처 및 참고 자료

1. 웹사이트

- 국가질검총국 : <http://www.aqsiq.gov.cn>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http://www.cnca.gov.cn>
- 위생부 : <http://www.moh.gov.cn>

2. 관련 법규

- 식품라벨관리규정
- 수출입정량포장식품라벨검험감독관리규정
- 정량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
- 정량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 정량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 정량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28050-2011)

제4장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수입식품의 반품, 폐기사례

Ⅰ 2015년 1~12월 한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 Ⅰ

- 총 104건 (농식품·농산가공 : 61건, 수산식품 30건, 기타 13건)
- 농식품 및 농산가공 : 라벨 및 포장 불합격(27건), 기준치 초과(24건), 식품변질(10건), 기타(43건)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
1월	1904100000	농심 새우깡(매운맛)	2.7	포장불합격	소각
	2008993100	삼육 김(카레맛)	16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100	삼육 김(매운맛)	16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100	삼육 김(오리지널)	22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106909090	곡물효소	800	대장균 기준치 초과	반품
2월	0303430000	냉동 통 참치	1505000	감각 검사 불합격	반품
	1806320000	Jekiss 블랙 초콜릿 92.8%	25.92	구리 기준치 초과	반품
	2106909090	메티에 민트초코	10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리치 토피넛 향 시럽	7.78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초콜릿 시럽	7.78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아몬드 시럽	7.82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리치 카라멜 시럽	7.78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레몬 시럽	7.78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바닐라 시럽	7.78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석류 시럽	8.048	라벨 불합격	소각
3월	2101200000	홍차 라떼 파우더	10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106909090	메티에 복분자 시럽	7.992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사과 시럽	7.936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레몬 시럽	7.544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메티에 홍자몽 향시럽	7.792	라벨 불합격	소각
	2106909090	대창 곡물음료	36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
4월	0307490000	냉동 오징어 입	768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1905310000	한미화 오트 크랜베리 과자	817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05511000	팔빙수용 통조림	360	포타슘 슬베이트 사용 반칙	소각
	2005999990	해남 깍두기	10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05999990	해남(맛김치) 김치	200	대장균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900	조미김	21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008993900	조미김	7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008993900	조미김	7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5월	0303390000	냉동 거세대	1804	제품과 증서 불일치	반품
	0303793000	냉동 병어	250	제품과 증서 불일치	반품
	0303799090	냉동 삼치	21500	제품과 증서 불일치	반품
6월	1604201990	동원참치(오리지널)	300	필요한 증서 및 합격증명자료 미제공	소각
	1704900000	페퍼민트 자일리톨	0.84	유통기한 초과	소각
	2008993100	조미김	4.08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106909090	남해꿀유자차	336	식품첨가제 젖산칼슘 사용	소각
	2106909090	감초차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106909090	고려진홍삼음료	4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202100090	핑크 석류에이드	16800	벤조산 기준치 초과	소각
	2202100090	블루 레몬에이드	16800	벤조산 기준치 초과	소각
	2202900099	동원 한국전통꿀음료	29.1	라벨 불합격	반품
	2202900099	동원 제주도감귤주스	29.1	라벨 불합격	반품
7월	1904100000	초코맛 팝콘	3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1905900000	오리온 브라우니 케익	112	식품첨가제 이산화유황 사용반칙	소각
	2001901090	마늘김치	7.5	요구에 따른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반품
	2001901090	櫛木芽김치	7.5	요구에 따른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반품
	2001901090	산마늘김치	7.5	요구에 따른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반품
	2005999990	고추튀김	35	요구에 따른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반품
	2008999000	말린 블루베리	160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품
	2008999000	말린 크랜베리	160	곰팡이 기준치 초과	반품
	2103909000	된장	2	요구에 따른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반품
	2103909000	쌈장	1.45	요구에 따른 증서 및 합격증명서 미제공	반품
	2106909090	발효과일아채즙	65	비타민B1 첨가량 국가표준에 미달	소각
8월	1904100000	초코 크런치	230	라벨 불합격	소각
	1904100000	바나나 크런치	230	라벨 불합격	소각
	1904100000	딸기 크런치	230	라벨 불합격	소각
	1904100000	우리 곡물바	180	수분 기준치 초과	반품
	1904100000	우리 오곡바	126	수분 기준치 초과	반품

구분	HSCODE	상품명칭	중량(kg)	불합격사유	조치
9월	0403100000	유기농 요거트	12	효고(균) 기준치 초과	소각
	1704900000	해태 사과 신짚이	224	식품첨가제 주석산 사용범위 초과	소각
	1904100000	한미화 뽕로로 설과	200.34	식품첨가제 사르니트륨 사용범위 초과	소각
	1904100000	청두 양파칩	132.8	식품첨가제 리보플라빈 사용범위 초과	소각
	1904100000	청두 고구마칩	136	식품첨가제 아세살핀칼륨 사용범위 초과	소각
	1905310000	청우 단호박 베비프렌	39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100	재래김	86.4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9000	참 좋은 사과칩/배칩	57.6	1. 대장균량 기준치 초과 2.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2106909090	바나나라떼음료	300	영양강화제 비타민B2 사용범위 초과	반품
	2106909090	생강차	225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106909090	생강차	225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106909090	꽃샘 꿀 대추차	600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2021000090	박락 탄산수	4	라벨 불합격	소각
	2202900099	비타1000	3.5	라벨 불합격	소각
	2202900099	생생톤 큐	3.5	라벨 불합격	소각
10월	2008993100	김	4.8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100	김	4.8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9000	수박차	360	비타민 B2 함량 기준치 초과	반품
	2106909090	우영차	4	서류미비	반품
	2106909090	고체분말음료	300	서류미비	소각
	2202900099	포도 액기스	240	납 기준치 초과	소각
11월	1905900000	과자	3.2	라벨 불합격	소각
	1905900000	김	17.6	비소 기준치 초과	소각
	2008993100	김	38.88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2202900099	채소음료	12	서류미비	소각
12월	0406900000	치즈롤	9.6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0406900000	고구마치즈롤	9.6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0406900000	치즈롤	16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0406900000	치즈롤	9.6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0406900000	치즈롤	9.6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각
	1806900000	초콜렛	8.64	라벨 불합격	소각
	1806900000	초콜렛	8.64	라벨 불합격	소각
	1806900000	초콜렛	8.64	라벨 불합격	소각
	1806900000	초콜렛	8.64	라벨 불합격	소각
	2008993100	김	64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반품

※ 출처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 원본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412/t20141216_1168256.html

